

주요 국가의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I

- 일본, 독일 사례 -

주요 국가의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I

- 일본, 독일 사례 -

일 시: 2016년 10월 21일(금) 14:00~16:30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본관 1층 교육장



주요 국가의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I

- 일본, 독일 사례 -

《사회》

백은령 (총신대학교 교수)

《발제》

발표1. 일본 사례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이해와 함의 ----- 5

정종화 (삼육대학교 교수)

발표2. 독일 사례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 Fib. e. V.를 통해 살펴본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 73

박재우 (우석대학교 강사)

《토론》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

발표1.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이해와 함의

정 종 화 (삼육대학교 교수)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이해와 함의

정 종 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변화는 매우 적극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축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다.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민권 운동이 초석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류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시스템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평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공평의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부(富)의 분배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그 가치의 형태는 노동능력이 되었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존중되었고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훈련의 대상 또는 약자로서 분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사회적 약자는 격리 보호, 수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우월주의와 서비스전달의 상하 관리 시스템은 결국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대책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점차 확대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한국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를 나열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과 장애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시설 자립생활이라는 전환점은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거주지원이라는 전화서비스를 창출하였고 그 결과는 매년 성과를 창출하며 발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거주생활시설과 부모의 보호아래 수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왔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복지를 시혜적서비스구조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장애인복지에 새로운 철학으로 등장한 것이 자립생활인 것이다. 기존의 “자립”이란 용어는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직업적 자립, 심리적 자립 등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립적인 개념구조에서 그 의미를 찾았고,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신체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에서 그 자립의 의미를 찾고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획득하는 것은 직업재활의 큰 성과로 평가 받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의료재활 훈련에서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신체적인 기능회복은 신체적재활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았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하면 그것이 자립의 성과로 크게 평가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평가는 결국, 노력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많은 장애인, 강한 장애인과 약한 장애인,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고 전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애인으로 평가되었으나 후자는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장애인으로 평가 절하되는 사회적 낙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와 같은 의미에서 자립을 찾고자 할 때, 중증장애인은 아무리 자립을 하려고 해도 신체적으로 불가능했고 재활보조기구나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수준에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식주 주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환자로 시설생활인으로 살아야 했고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해도 사회 환경이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 안에서 가족에 의존하여 살아야 했고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문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 바로 자립생활의 철학인 것이다.

사회자립생활서비스는 “지역사회로 통합되어 다른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존중받고 가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자립지원제도를 연구¹⁾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의 제도에 대하여 법률적 기반에 근거하여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입법배경

1) 장애인기본법의 성립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마다 장애 종류로 분류되어 규정되었다. 따라서 담당하는 행정전달체계도 각각 달라서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장애인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의 발전을 피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 지금까지의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을 개정한 장애인복지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이 성립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공포·시행되었다. 장애인기본법은 그 이후에도 2004년에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피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노력의무였던 광역지자체(도·도·부·현)과 기초지자체(시·정·촌)²⁾의 장애인기본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2)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2003년에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 등을 행정처분으로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던 조치제도가 바뀌었다.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서비스 사업자와의 대응한 관계 확립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이 지원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그리고 근거법이 여러 분야로 분리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1)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2012)와 우체국공익재단 시범사업(2015) 책임연구원: 정종화 교수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서울복지재단 전문가 연구포럼자료(2016.10.21. 서울복지재단)로 제출한 것임.

2) 도·도·부·현은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광역자치단체(광역지자체)로서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고, 시·정·촌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지원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다. 지원비 제도 도입에 의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증가이다. 이용자 증가로 각 자치제의 비용부담이 급증하였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장애종별로 분단되어 있던 장애인복지제도를 장애인기본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의 관점에서 일원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한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조치제도에서 지원비제도로, 그리고 지원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지원법이 2006년 4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종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이 정비되어 시설과 사업이 재편 되었고 취로지원 등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자립지원법에서 종합지원법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배포한 메니페스토에는 자립지원법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에「개정」이 이루어진다. 2010년 12월 개정 후에도 자립지원법의 근본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자립지원법을 대신할 법률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2012년 3월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안」이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2012년 6월 20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6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자립지원법의 제목을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종합지원법)」로 개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전혀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립지원법의 일부개정이고 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국회의 정치혼란과 재정적자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다.

나.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고찰 필요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은 인권의 한 표현 또는 시민권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는 개념체계이다. 자립생활의 근본 개념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은 자기의사결정(Self-determination)과 선택권(Choice making) 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원리에 있어 핵심 사상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의 개념은 장애인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모험이나 그 결과에 따른 위험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으로서, ‘자립생활’은 미국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도 그 기본정신을 자립생활

에 두고 있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일찍이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확대·발전되는 상황에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새 지평을 열 패러다임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운동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행정편의를 도모한 차별적 시스템과 장애인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일본의 모델을 한국식으로 변용한 것들이 많다.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등은 일본에서도 폐기되어 가는 추세이나, 한국은 등급재심사로 더욱 엄격한 의료적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자립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전략, 서비스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문화적·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자립생활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³⁾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자립생활을 정의하면, 자립생활이란 의사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득되는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변처리,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의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및 심리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하 “장애인종합지원법”이라 한다)」의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그러한 자립생활제도가 한국에서 갖는 시사점과 그 과제,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시론적인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다. 분석의 기준(틀)

본 연구는 주로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에 한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의 체계”와 공행정 전달체계로서 “공적 행정조직과 인력”의 범위로 하여 그 문제점과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인력이라 함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종사자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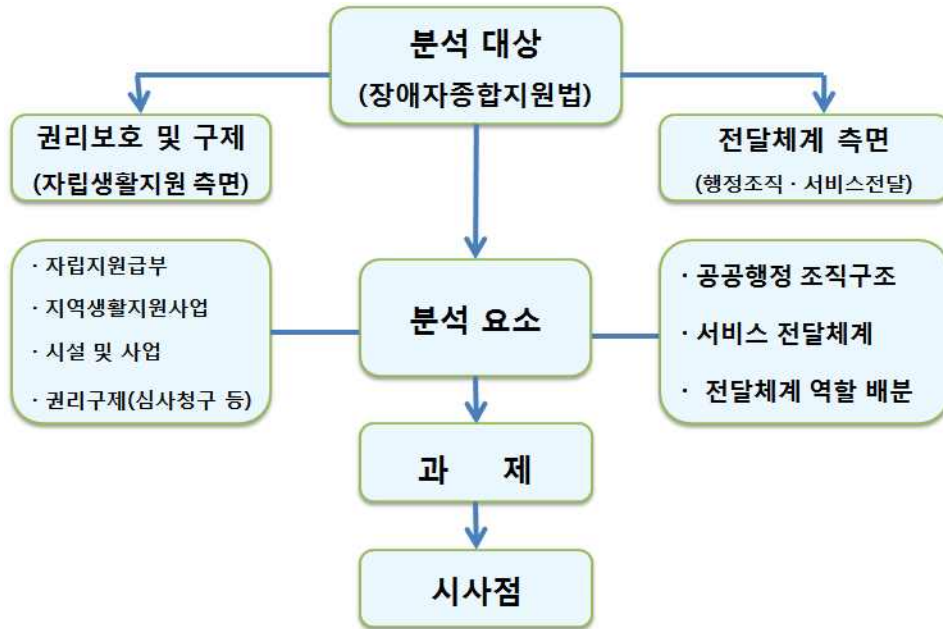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공행정 전달체계는 행정조직, 전문 인력 등이 급여의 수요에 따라 적합하게 확립하고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의 개별 법률에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어떠한 수속을 밟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직, 어떠한

3)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자기의 역할을 유지할 능력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일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일본자립생활연구회, 1996).

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수행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립생활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분석하려고 한다.

<그림 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 분석틀



2.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및 인권의 침해 등에 있어 다면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각종 지원과 권리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표 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⁴⁾과 같이 본칙 총 10장 1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본 표는 일본장애인종합지원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조항 구성을 위해 연구자가 배치기준을 재구성한 것임.

<표 1>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장 별	제 목	조항 수
제1장	총 칙	6
제2장	자립지원급여	85
제3장	지역생활지원사업	3
제4장	사업 및 시설	8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8
제6장	비용	5
제7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인종합지원법 관계 업무	3
제8장	심사청구	9
제9장	잡 칙	4
제10장	벌 칙	7
부 칙		1

장 및 절		조 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기본 이념) 제2조 (기초지자체의 책무) 제3조 (국민의 책무) 제4조 (정의 : 장애인) 제5조 (정의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2장 자립지원 급여	제1절 통칙 (제6조~제14조)	제6조 (자립지원급여)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8조 (부당이익의 징수) 제9조 / 제10조 / 제11조 (보고 등) 제12조 (자료의 제공 등)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제2절 개호급여, 특례개 호급여, 훈련등급여, 특 례훈련등급여, 특정장애 인특별급여 및 특례특 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15조~제51조의4)	제1관 시·정·촌심사회 (제15조~제18조) 제15조 / 제16조 (시·정·촌심사회) 제17조 (공동설치지원) 제18조 (정령에의 위임) 제2관 지급결정 등(제19조~제27조) 제19조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제20조 (신청) 제21조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제22조 (지급급여의 결정 등)

		<div data-bbox="667 297 1323 50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23조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4조 (지급결정의 변경) 제25조 (지급결정의 취소) 제26조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제27조 (정령에의 위임)</p> </div> <p>제3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제28조~제31조)</p> <div data-bbox="667 640 1323 89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28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제29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제30조(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 급여) 제31조(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p> </div> <p>제4관 특정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제32조~제35조)</p> <div data-bbox="667 1043 1323 120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35조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p> </div> <p>제5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제36조~제51조)</p> <div data-bbox="667 1346 1323 197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3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제38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제39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제40조 삭제 제41조 (지정의 갱신)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제44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제45조 삭제 제46조 (변경신고 등) 제47조(지정사퇴)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p> </div>
--	--	--

		<p>또는 원조) 제48조 (보고 등) 제49조 (권고, 명령 등) 제50조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 (공시)</p> <p>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 - 제51조의 4)</p> <p>제51조의 2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 (보고 등) 제51조의 4 (권고, 명령 등)</p>
<p>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의5~제51의33조)</p>		<p>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의 5 ~ 제51조의 15)</p> <p>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제51조의 6 (신청) 제51조의 7 (급여여부 결정 등)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제51조의 10(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제51조의 11(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제51조의 12 (정령에의 위임)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제51조의 14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제51조의 15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p> <p>제2관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의 16 ~ 제51조의 18)</p> <p>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급여비의 지급) 제51조의 17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제51조의 18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p> <p>제3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제51조의 19~제51조의 30)</p> <p>제51조의 19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p>

		<p>제51조의 20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1 (지정의 갱신)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제51조의 23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4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5 (변경의 신고 등) 제51조의 26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제51조의 27 (보고 등) 제51조의 28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29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 30 (공시)</p> <p>제4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제51조의 33)</p> <p>제51조의 31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2 (보고 등) 제51조의 33 (권고, 명령 등)</p>
	<p>제4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 의료비의 지급 (제52조~제75조)</p>	<p>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제53조 (신청) 제54조 (지급인정 등) 제55조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제56조 (지급인정의 변경) 제57조 (지급인정의 취소) 제58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제59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제60조 (지정의 갱신)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제62조 (진료방침) 제63조 (광역지자체장의 지도) 제64조 (변경신고) 제65조 (지정의 사퇴) 제66조 (보고 등) 제67조 (보고, 명령 등) 제68조 (지정취소 등) 제69조 (공시) 제70조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1조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p>

		제72조 (준용) 제73조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제74조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제75조 (정령에의 위임)
	제5절 보장구비의 지급 (제76조)	제76조 (보장구비의 지급)
	제6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2)	제76조의2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3장 지역생활 지원사업	(제77조~제78조)	제77조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7조의2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제78조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4장 사업및시 설	(제79조~제86조)	제79조 (사업의 개시 등) 제80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기준) 제81조 (보고의 징수 등) 제82조 (사업의 정지 등) 제83조 (시설의 설치 등) 제84조 (시설의 기준) 제85조 (보고의 징수 등) 제86조 (사업의 정지 등)
제5장 장애인복지계획 (제87조~제91조)		제87조 (기본방침) 제88조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 / 제89조의 2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의 3 (협의회의 설치) 제90조 (광역지자체의 장의 조언 등) 제91조 (국가의 지원)
제6장 비용 (제92조~제96조)		제92조 (기초지자체의 지급) 제93조 (광역지자체의 지급) 제94조 (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

	제95조 (국가의 부담 및 보조) 제96조 (준용규정)	
제7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인종합지원법 관계 업무 (제96조의2 ~ 96조의4)	제96조의 2 (연합회의 업무) 제96조의 3 (의결권의 특례) 제96조의 4 (구분 경리)	
제8장 심사청구 (제97조~제105조)	제97조 (심사청구)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제99조 (위원의 임기) 제100조 (회장) 제102조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3조 (심사를 위한 처분) 제104조 (정령 등예의 위임) 제105조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제9장 잡칙 (제106조~제108조)	제105조의 2 (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06조 (대도시 등의 특례) 제107조 (권한의 위임) 제108조 (실시규정)	
제10장 벌칙 (제109조~제11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부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법 시행일 규정</td> </tr> </table>	• 법 시행일 규정
• 법 시행일 규정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호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을 수급자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를 종합하여 법적 고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가 되는 법상 수급권영역의 권리성 등의 고찰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급여와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 구조를 검토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과 이에 법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률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 체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법의 목적규정은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종합지원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장애인기본법(법률 제84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인복지법(법률 제283호), 지적장애인복지법(법률 제37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64호) 기타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

즉, 대부분 法文의 형태가 “㉠를 ㉡함으로써 ㉢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와 ㉡는 목적 달성의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도나 사업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진술되어 있고, ㉢는 그 법의 적용대상자(수급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역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이념

제1조의2 (2013년 4월 1일 시행)에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대상, 제도, 관행, 관념 그 외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이념은 사회복지수급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權利性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규정, 법률안의 목적 규정, 국가책임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장애인은 사회복지에 대한 法的 權利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를 인간다운 생활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자신의 가까운 장소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관계, 제도, 관행, 관념 그 밖에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국민의 책무)에서는 「모든 국민의 장애 유무에 의해 구별되어짐 없이 상호 인격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초지자체의 책무

기초지자체(특별구를 포함하며 이하에서 시·정·촌을 기초지자체라 한다)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제2조).

- 一 .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구역의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재활(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123호) 제2조 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모색하며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 二 .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할 것.
- 三 .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 및 조정을 행할 것.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

기초지자체의 책무로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또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구역에 있어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에, 공공직업안정소 그 밖의 직업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권리옹호는 사회정의의 보장과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것, 그리고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거나 배제되어 온 사람에게 권한과 능력을 배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책무

장애인종합지원법 제2조 2항은 광역지자체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 一 .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할 것.
- 二 . 기초지자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필요한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 三 .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 四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따라서 이 법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a)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 (b)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c)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d)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 (e)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등으로 하고 있다.

3) 국가의 책무

이 법 제2조 3항에서 “국가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자립지원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이 법률에 기초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4항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생활의 실태」에 따라 시책을 책정,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해 시책을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의 책무

이 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등이 그 능력 및 적성에 맞게 자립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물론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다. 수급대상자의 적격성

1) 서비스의 대상자

이 법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법 영역이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구체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조 1항에서 장애인의 범위(2013년 4월 1일 시행)는 “이 법률상의 [장애인]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지원법 2004년 법률 제167호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발달 장애인을 포함하며, 지적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을 제외한다. 이하 [정신장애인]라 한다)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장애 정도가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한 정도의 자로, 18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빈틈없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규정(정의)에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 그 밖에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것(난병)으로 장애정도가 노동후생대신이

정한 정도인 자를 추가하고 있다. 그 범위가 범위 보다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병환자 등에서 증상의 변동 등에 의해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일정한 장애를 가진 자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그 서비스대상을 「신체장애인(장애아동 포함),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등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 법이 제정 전에는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법과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 때문에 시설이용 하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지원구분

이 법 제21조(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2014년 4월 1일 시행)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촌심사회는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범위의 변경하고 있다.

즉 장애등급제를 인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아닌 장애인 등의 장애의 다양한 특성과 그 밖의 신체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필요 정도를 나타낸 구분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장애정도구분」을 「장애지원구분」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는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범위 및 장애지원 구분의 개정
① 지금까지의 3종의 장애에 더하여 발달장애가 이 법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
② 장애지원 구분의 명칭과 정의 변경(장애지원 구분 자체도 장애의 다양성을 기본으로 개정)

라. 법의 주요 급여와 서비스

1) 자립지원급여

이 법 제6조에서 자립지원급여에는 개호급여비, 특례개호급여비, 훈련등급여비, 특례훈련등급여비,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및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등급여비 등이 있다.

이 법에서 ‘급여’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급여’는 ‘서비스와 현금 등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① 지급결정 등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호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i)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제19조)

(1)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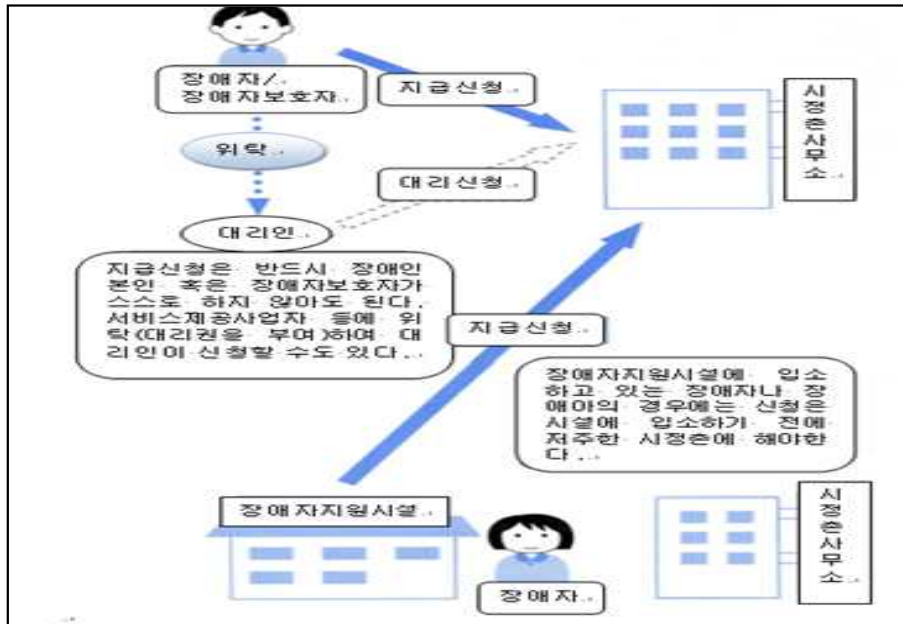
(2)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특정시설입소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시설입소장애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장애인은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장애인은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3) 장애아동 입소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조치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등이 계속해서, 개호급여등의 지급를 받거나, 입소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특정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등의 보호자였던 자가 있었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등에게 보호자인 자가 없거나, 보호자였던 자가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고, 또는 보호자였던 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장애인등은 그 해당 장애인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재지였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장애인등이 입소한 특정시설은 해당 특정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인등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기초지자체에 협력해야 한다.

ii) 개호급여 등의 급여 신청절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림 2> 급여신청절차와 같이 지급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그림 2> 급여신청절차



(1) 이 법 제20조에서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급신청은 장애인 본인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다. 신청을 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는 해당 장애아동의 거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향에 규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 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결정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다.

(4)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보유할 때에는, 해당 조사를 다른 기초지자체에 촉탁할 수 있다. 또한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를 수행케 해야 한다.

(5)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기타 어떤 명칭을 쓰든지에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들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해당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법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본다.

iii) 지급급여의 결정 등

(1) 이 법 제22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 해당 장애인 등의 개호를 하는 자의 상황, 해당 장애인등의 주변환경,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다. 여기서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및 급여량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대상자 심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심사 우려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없다.

(2) 기초지자체는 지급요구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 또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지적장애인 갱생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또는 아동상담소(이하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급여부결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신청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서비스등이용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별로 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걸쳐 개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하 [지급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급증(이하 [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iv)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이 법 제26조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개호급여 등 지급결정, 신청 등의 업무에 관해 광역지자체가 설치한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서 「~ 를 둔다」규정은 광역지자체 심사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②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등급여 및 특례훈련등급여의 지급

이 법 제28조 1항에서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및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급여(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원호, 행동원호, 요양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공동생활개호, 시설입소지원,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및 공동생활지원을 의미한다.

- 一 . 재택개호
- 二 . 중증방문개호
- 三 . 동행 원호
- 四 . 행동원호
- 五 .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 六 . 생활개호
- 七 . 단기입소
- 八 .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 九 . 시설입소지원

한편 동조 2항에서는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등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 一 . 자립훈련
- 二 . 취업이행지원
- 三 . 취업계속지원
- 四 . 공동생활지원

i)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지급

(1)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시행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또는 장애인 지원시설(이하 [지정장애인 지원시설]이라 한다)에게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또는 희망원로부터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급결정장애인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시설장애인 복지 서비스(지급량 범위 내에 한함. 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식사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 또는 체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특정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제29조).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이란 장애인복지 서비스(장애인 지원시설,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지적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のぞみの園)법(2002년 법률 제167호) 제1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이 설치하는 시설(이하 [희망원(のぞみの園)]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입소지원 및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는 같다)를 제외한다)를 실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으려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급증을 제시해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가액은 1개월에 대해, 제1호에서 드는 액수에서 제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 一 .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
- 二 .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의 가계의 부담 능력 그 외의 사정을 참작 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이 전호에서 드는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 가액)

(4)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로서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결정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만일 지불이 있었을 때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본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호급여 또는 훈련등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 또는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에 비추어 심사한 뒤 지불한다. 지불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법(1958년 법률 제192호) 제45조 5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ii)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급여의 지급

이 법 제30조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의 범위 내의 것에 한함)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함)에 대하여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一 .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 二 .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이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다음과 같은 사업소 또는 시설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 三 .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여기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소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하 [기준 해당 사업소]라 한다)를 의미하며,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란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시설(이하 [기준해당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급여의 가액은, 월당, 그 달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의 합산액에서, 각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정령에서 정하는 비용이 해당 합계한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여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 一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등 :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
- 二 .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특정 비용을 제함) 비용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

③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이 법에서는 이용본인부담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입소 지원, 공동생활지원과 그 밖의 장애인복지서비스비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 시설에 있어서의 식사·거주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광열비의 일부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로서 지급하게 되었다. 여기서 [시설입소지원]이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지원]이란 지역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개호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i)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이 법 제34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지원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특정입소 등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중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1항에서 [특정장애인]라 한다)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안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또는 공동생활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입주하고, 해당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특정 입소 등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특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공동생활 지원을 받은 주거에서의 식사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거주에 소요된 비용(동항에서 [특정입소 등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의 지역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룹홈·케어 홈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창설한다(2014년 4월 1일 시행). 공동생활하는 주거에서 케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개호(케어홈)를 공동생활지원(그룹홈)으로 일원화한다. 공동생활지원에서 일상생활상 상담을 추가하여 목욕, 배설, 식사개호와 그 외 일상생활상 원조를 하도록 하였다.

ii)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는 기준해당시설 또는 공동생활주거에 있어 소요된 식비와 광열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또한 지정장애인시설이란 기준에 맞으며 광역지자체(도·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기준해당시설이란 인원배치기준이나 설비, 운영요건의 일부만을 충족시킨 시설을 말한다.

이 법 제35조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또는 기준 해당 시설 또는 공동생활지원을 받은 주거에서의 특정 입소 등 비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一 . 특정장애인이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 二 . 특정장애인이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④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i)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정류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서 [서비스사업소]라 한다)별로 행한다(제36조).

취업계속지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신청은 해당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정해 실시한다.

광역지자체의 장은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구역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역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ii)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장애인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정함으로써 행한다(제3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 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의 총원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지정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역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iii) 지정의 갱신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잃는다. 갱신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지정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제41조).

iv)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이하 [지정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재활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해당 장애인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2조).

지정사업자 등은 그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거나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정사업자 등은 장애인 등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v)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별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 一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 三 .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운영에관한사항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인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또한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vi) 광역지자체장 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장애 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할 수 있다.

2)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이 법에서 [상담지원]은, 기본상담지원, 지역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을 말하며, [지역 상담지원]은 지역 이행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말한다. 그리고 [계획 상담지원]이란 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말한다.

또한 [기본 상담지원]은 지역의 장애인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등의 개호를 하는 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하며, 아울러 이들과 기초지자체 및 제2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등과의 연락 조정(서비스이용지원 및 계속서비스이용지원을 제외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i)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이 법 제51조의5에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또는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함으로써(제51조의6 신청) 기초지자체의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등을 지급하다는 취지결정(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이라 한다)를 받아야만 한다.

(1) 기초지자체의 급여여부 결정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의 심신 상태, 해당 장애인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상담지원급여등의 지

급의 여부결정(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 12에 대해 [급여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한다(제51조의7).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에 필요할 때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여여부결정과 관련된 장애인,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지정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등 이용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장애인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 대신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급여여부결정을 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로 1개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지역상담지원급여등을 지급하는 지역상담지원의 양(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하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이 법 제51조의11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ii)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이 법 제51조의13에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은, 지역상담지원에 대해서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1)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안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지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이하 [지정지역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지역상담지원 급여량의 범위내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동일하다)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역상담지원급여를 지급한다(제51조의 14).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는 지정지역상담지원 종류별로 지정지역상담지원으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실제로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때는,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로써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한도에서,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을 대신하여, 해당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지불되었을 때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지역상담지원 급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장이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를 청구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지역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대로 심사 후, 지불한다.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이 법 제51조의15에서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가,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효력이 생긴 전날까지의 사이에, 긴급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로 한 비용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비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비용을 초과하는, 해당 현재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② 계획상담지원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급여비의 지급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은 계획상담지원에 대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i)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한다.

- 一 .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서비스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등을 받았을 때.
- 二 . 지급결정장애인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계속 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는 지정서비스이용지원 또는 지정계속서비스이용 지원(이하 [지정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의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 법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은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인등 또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주변 환경, 해당 장애인등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급결정,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또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하 [지급결정 등]이라 총칭한다)을 받은 후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등,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그 밖의 자(다음 항에서 [관계자]라 한다)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이다.

ii)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인등이, 지정계획상담지원 이외의 계획상담지원(이하 이 조에 대해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시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i)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및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제51조의 19).

특히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으로써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제51조의23 제1항).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신고일 전 1개월 내에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역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ii)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을 하는 자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한 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특정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제51조의20 제1항).

특히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으로써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제51조의24 제1항).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기준대로, 지정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일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계획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iii)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이 법 제51조의22에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이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그 외의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를 도모하면서, 상담지원을 해당 장애인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상담지원의 질을 평가하고,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담지원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장애인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시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등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④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이 법 제51조의31에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의무이행이 확보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기초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업무관리체제를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종업원에게도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소, 사무소 기타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제51조의31 2항).

- | |
|--|
| 一 . 다음호 및 제 3호에 든 지정상담지원사업자 이외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
| 二 . 특정 상담지원사업 만을 운영하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기초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
| 三 .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2개이상의 광역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

여기서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성 장관,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대해 [후생노동성 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자립지원의료비, 영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영양개호의료비의 지급

① 자립지원의료와 자립지원의료비의 인정과 지급

i)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이 법에서 [자립지원의료]란 장애인 등에 대해 그 심신장애의 완화를 도모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심신장애 상태의 경감(輕減)을 위해 자립된 일상생활과 자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로 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자립지원의료비가 지원된다. 자립지원의료비는 종래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育成醫療),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원의료(精神通院醫療),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갱생의료(更生醫療)를 통합한 것이다.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은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는 취지의 인정(이하 [지급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여기서 지급인정을 받으려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광역지자체가 지급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가 없을 경우 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ii) 자립지원의료비 인정과 지급

(1) 지급인정 등

이 법 제54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에 관한 장애인등이 그 심신장애의 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장애인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상황, 치료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지급인정을 행한다.

기초지자체 등이 지급인정을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한다.

기초지자체는 지급인정을 할 때, 지급인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지급인정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전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립지원의료수급증(이하 [의료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과거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원의료,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갱생의료를 통합한 것이라고는 해도 그 지급신청절차는 관할에 따라 다르다.

자립지원의료비 가운데 육성의료는 실시주체인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직접 자립지원비에 신청한다. 정신통원의료는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실시주체인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갱생의료는 실시주체가 기초지자체(시·정·촌)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직접 신청한다. 지급인정에 있어 각각의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주체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을 정하고 그것을 기재한 수급자증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이용자가 지정자립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이 법 제58조에서 기초지자체 등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자립지원의료(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라 한다)를 받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인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한다.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으려는 지급인정장애인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의료수급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립지원의료비의 가액은 1개월당, 제1호에 든 가액(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식사요양(건강보험법 제63조 2항 1호에 규정하는 식사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2호에 드는 가액의 합산액,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생활요양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3호에 드는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一 .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 및 생활요양을 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들의 가계부담능력, 장애의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해당 산정한 가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 二 .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조 2항에 규정하는 식사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인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 三 . 해당지정자립지원의료(생활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생활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인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립지원의료비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게 지불할 수 있다. 가령 지불이 있었을 때에는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또는 진료소(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 또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행한다(제59조). 여기서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제60조).

(4)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해야 한다(제61조). 또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진료방침은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의 예를 따른다(제62조). 진료방침에 따를 수 없을 때 또는 적당하지 않을 때의 진료방침은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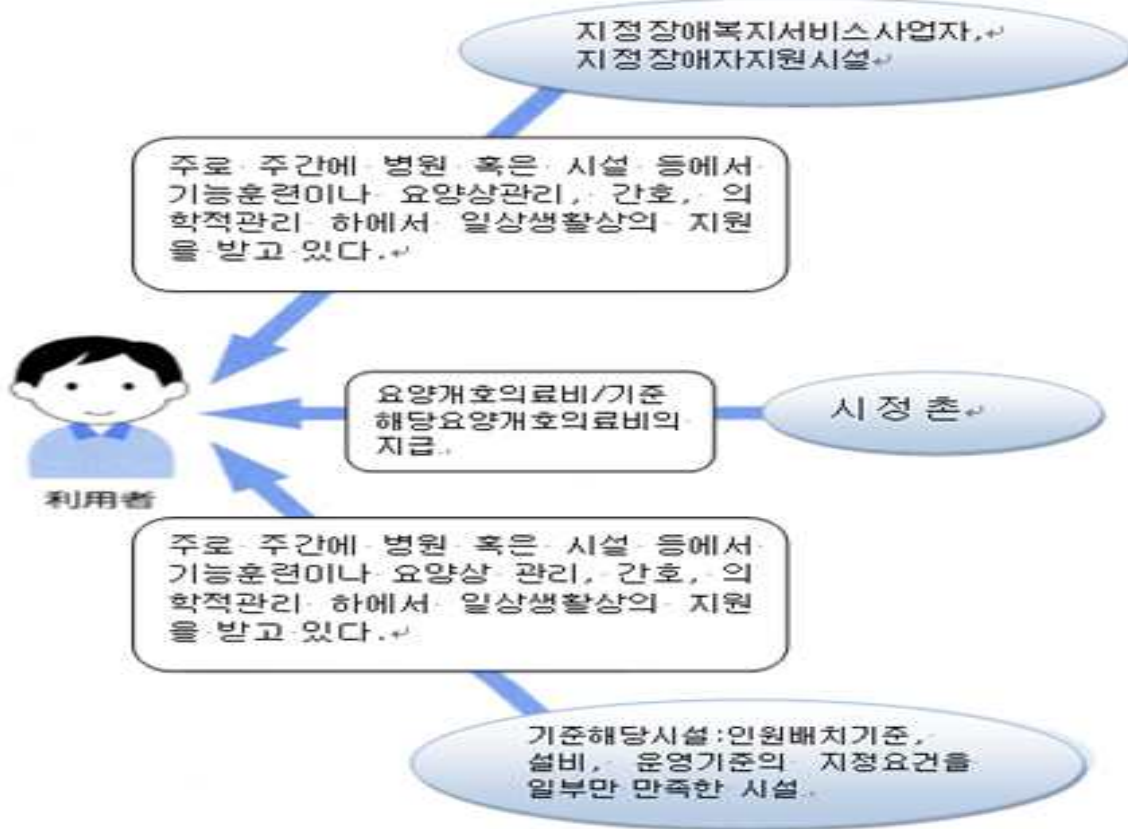
(5) 광역지자체장의 지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요양개호의료비·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는 이용자가 의료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주로 낮에 병원이나 시설에서 기능훈련, 영양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 개호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이며,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한 것이다. 필요한 비용의 요양개호의료비가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가 요양개호의료를 받은 시설이 기준해당시설인 경우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가 지급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요양개호의료비·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시스템



i)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결정에 관한 요양개호의료비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에게 해당 요양개호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제70조 1항).

ii)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특례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이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로부터 해당 요양개호의료(이하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에 대해 해당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제71조).

iii)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이 법 제73조에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 행하는 기준해당 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비부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내용 및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자립지원의료비]라 한다)의 청구를 수시로 심사하고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지정자립지원의료비를 받을 때(제70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비부담의료기관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장은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본법(1948년 법률 제129호)에 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 심사위원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공비부담의료기관에 대한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연합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이의신청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iv)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이 법 제74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지급인정 또는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업무에 관해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4) 보장구·보장구비의 지급과 판정

① 보장구의 개념

이 법에서 [보장구]란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수, 의족, 장구,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구에 대해서는 그 종목을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고 있고, 다음 세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1) 신체결손 또는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각각의 장애에 대응하여 설계 및 가공된 것.
- (2) 신체에 장착해 일상생활 또는 취학(취로)에 활용되는 것으로 동일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
- (3) 급여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전문적인 지식이란 의사에 의한 판단이다).

② 보장구비 지급과 이용자 부담

이 법 제76조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중 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상태를 판단하여 해당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일 경우,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보장구비의 가액은 1개월당으로, 동일한 달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장비에 대해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기준액의 합계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기초지자체에 비용지급을 청구한다. 종래에는 보장구의 제작과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지자체의 결정을 받은 이용자 자신이 제작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먼저 지불하고 기초지자체가 통상 필요한 금액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 있었다. 2012년 4월 1일부터는 1개월당 같은 달에 구입 또는 수리한 보장구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비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용자의 가계부담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지자체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정령에서 정한 금액이 산정한 비용 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었을 경우 10%가 적용된다. 즉 이용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은 최대 보장구비의 10%이다. 가령 정률부담에서는 중증의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부담액이 증가한다. 그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0%부담으로 정하였지만 소득에 따른 월액상한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담증가를 덜어주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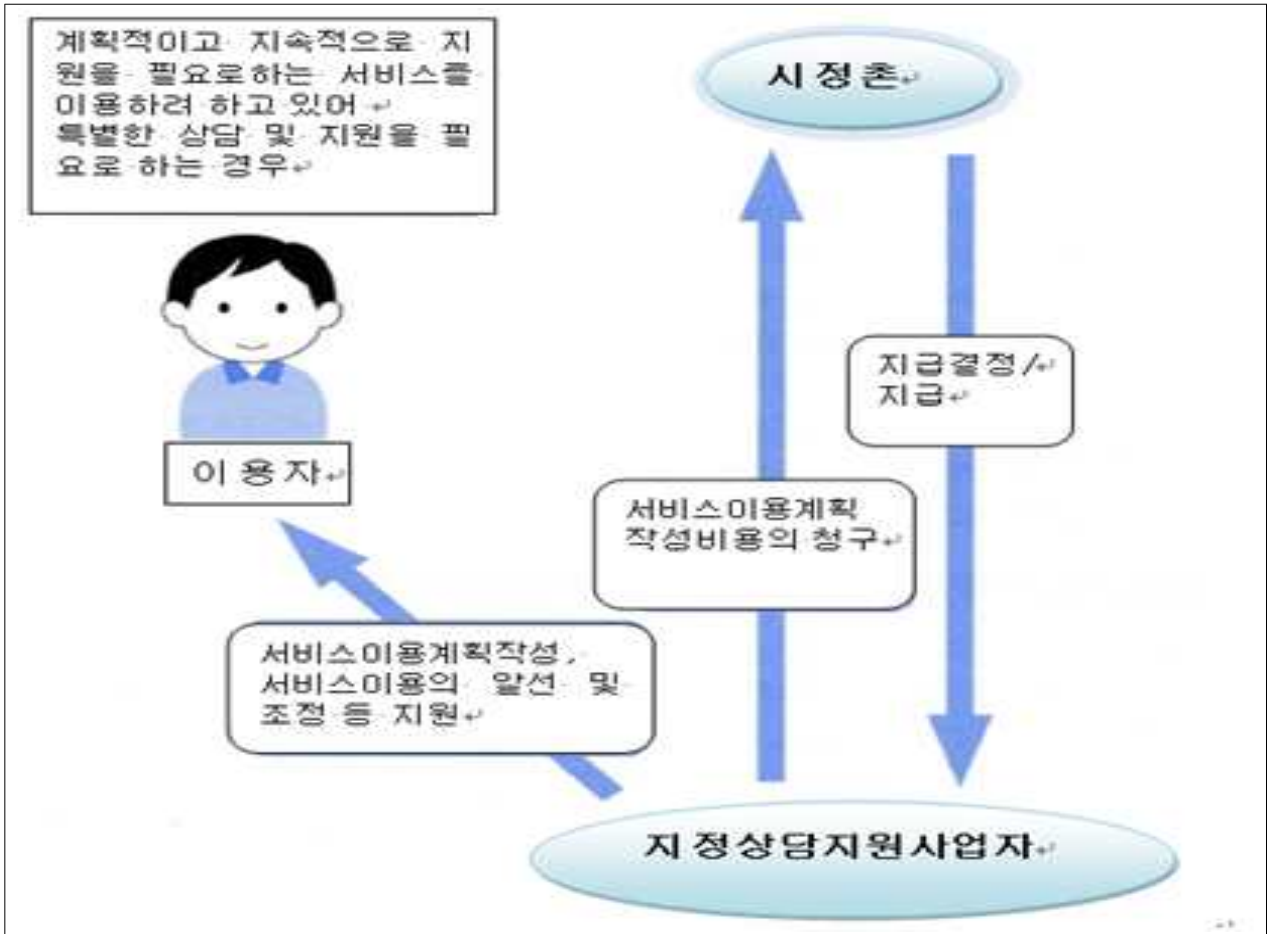
한편 기초지자체는 보장구비의 지급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그 밖의 자립지원급여

① 서비스 이용계획작성비의 지급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자립지원급여의 지급결정을 받고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계획의 작성, 서비스 이용의 알선 및 조정 등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청구하고 이 청구에 근거하여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결정하며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이 없다.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에 대해서는 (그림 4)과 같이 현행법에서 상담지원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4> 서비스이용 계획서작성 비용의 지급



②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급여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 장애인들이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등의 대상 서비스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각각 후생 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소요된 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해당 비용에 지급된 개호급여 등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들에게,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를 지급한다.

동일세대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복수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세대가 지급하는 비용부담이 크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세대 이용자의 부담을 월액 부담상한액까지 경감한다. 이용자가 복수가 아닌 경우에도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 및 개호보험제도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용자 부담이 매우 고액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도 이용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서비스의 재원이 세금을 중심으로 한 것에 비해 개호보험제도는 보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립지원급여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가 별개의 것인 경우에는 이 양자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종래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보장구의 이용자 부담의 상한은 각각 구별되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용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구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

이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호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장애인차별조사와 인권침해예방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한다면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에서 “자립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에서 “조세 기타 공과는 자립지원급여로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수급권을 법규상 보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구제절차를 일반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구체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다.

1) 심사청구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도·도·부·현의 지사)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7조 1항).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등 또는 지역상담지원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판정의 불복할 때에 심사청구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이의신청법이라는 법률이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의 권한으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복신청을 한다. 다만 처분한 행정청 자신이 자신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그 것을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신청인은 불만이 남는다. 따라서 행정이의신청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규정을 설치하고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비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1)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 사건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개호급여 등 이의신청심사회(이하 [이의신청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제98조).

(2) 이의신청심사회의 의원 정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원으로 하되, 위원

은 수준 높은 인격과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 심사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광역지자체의 이의신청심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급여는 물론 학대·방임·착취·구금 및 무시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권, 장애인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 실종 장애인에 관한 임무 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②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장

이의신청심사회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전항 규정에 준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제 101조). 이 경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수리했을 때, 원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심사를 위한 처분

이 법 제103조에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그 출두를 명령하여 심문하거나 의사 기타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다음 항에서 [의사 등]이라 한다)에게 진단 기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광역지자체는 출두한 관계인 또는 진단 기타 조사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 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장애지원 구분에 대한 처분, 지급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처분, 이용자 부담에 대한 처분으로 구분된다.

- ① 장애지원 구분에 대한 처분
 - 장애지원 구분에 인정 및 그 변경 인정
- ② 지급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처분
 - 개호급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결정
 - 지급결정(서비스 종류, 지급하는 양, 유효기관) 및 그 변경의 결정
 - 지급결정 취소의 결정
 -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비 지급대상자 등의 인정
 - 개호급여비의 지급 결정
 - 특례개호급여비의 지급 결정
 - 특례훈련 등 급여비의 지급 결정
 -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의 지급 결정
- ③ 이용자 부담에 대한 처분
 - 이용자 부담 상한월액의 관한 결정
 - 이용자 부담의 재해감면 등의 결정
 -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여결정
 - 고충급여의 결정

가령, 장애인은 판정의 불복할 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이의 신청법이라는 법률이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권한으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복신청을 한다. 그러나 처분한 행정청자신이 자신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그 것을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신청인은 불만이 남는다. 따라서 행정이의신청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규정을 설치하고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비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제97조 1항(심사청구)에 규정하는 처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제105조).

여기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침해가 예상된다.

4.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가. 공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설치되는 주요 공적 행정 조직 및 전문인력과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 전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구는 시·정·촌심사회, 기간 상담지원센터, 지역활동지원센터 등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公的 行政體系 重要性이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행정 체계는 다양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많은 중앙부처가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는 생활하는 현장인 지역사회 속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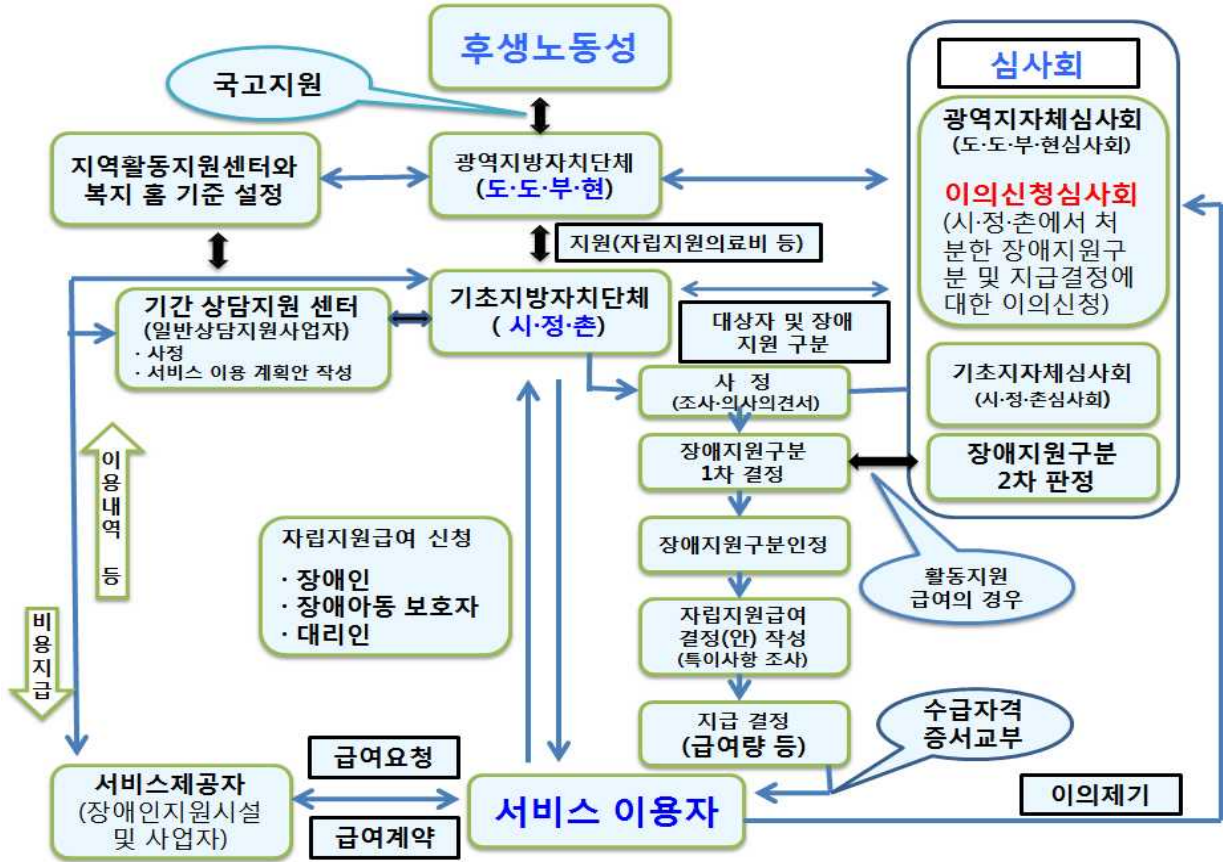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이 법의 전달체계 측면에 있어서 공행정조직과 역할배분, 복지서비스신청과 이용절차 등의 전달체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1) 공적 행정조직의 구조에 대한 분석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장애아동 포함)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자체(시·정·촌)로 일원화되었다. 이전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종별에 따라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되거나 기초지자체가 되는 등 다양하였다. 다만 자립지원의료 가운데 육성의료와 정신통원의료는 광역지자체가 제공의 주체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는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가능한 것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 행동반경이 좁은 이용자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다. 이 법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공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공공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



2) 시정촌심사회

① 설치운영

심사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에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시·정·촌 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5조).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지원(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지급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의 의견 청취 등)에 의하여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개호급여등의 지급결정(제19조 1항)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등급여 또는 특례훈련등급여(이하 [개호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회 위원의 정수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위원은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이 임명한다(제16조).

③ 공동설치지원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설치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 상호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를 공동설치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그 원활한 운영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제17조).

3)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① 설치운영

기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제77조의2 제1항).

- | |
|---|
| <p>三 .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p> <p>四 .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p> |
|---|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는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77조의2 제2항).

기간 상담지원 센터는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장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센터의 설치·운영의 의무조항을 지방재정 사정과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 등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② 위탁운영

기초지자체는 일반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제77조의2 제3항). 가령 위탁을 받은 자는,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는 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장애인복지사업자등, 의료기간, 민생위원법 (1948년 법률 제198호)에 정한 민생위원,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신체장애인상담원, 지적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적장애인상담원,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고, 또는 파견하는 사업의 관계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노력해야만 한다.

한편 위탁을 받아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77조의2 제6항). 이 규정을 위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

①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설치 및 운영

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 2항에 있어 같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제80조 1항). 여기서 지역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 다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복지 홈]이란 주거를 구하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주택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 기준(제80조)의 업무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기관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간상담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 二 .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및 복지 홈에 관한 방의 평면적
- 三 .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과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등의 안전확보 및 비밀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 四 .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관한 이용 정원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제80조 2항).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치자는 동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보고의 징수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 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또는 그 사업소 또는 그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제81조).

③ 사업의 정지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

시행자가 이 장의 규정 또는 해당규정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그 사업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피하거나 그 사업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하였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1조의7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82조 1항).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자 또는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의 설치자가 해당 규정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이 제80조 1항 기준[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1조의7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설치자에 대해 그 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5) 장애인지원 시설의 설치 등

① 설치운영

(1) 국가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제83조 1항). 장애인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규상 강행적 설치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은 장애인에 대해 시설입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입소지원 이외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희망원 및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기준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제84조 1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一 . 장애인지원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二 .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三 .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四 .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이용 정원 |
|--|

③ 국가 등 이외의 자가 설치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의 기준을 사회복지법 제65조 1항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동법 제62조 4항, 제65조 3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보고의 징수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제85조 1항).

⑤ 사업의 정지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이 제84조 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할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제86조 1항).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배분

다음 <표 2>와 같이 기초지자체(시·정·촌)와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하고 있다.

<표 2> 기초지자체(시·정·촌)와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

<p>광역지자체 (도·도·부·현)</p>	<p>육성의료 및 정신통원의료비의 지급결정 등, 광역지자체(도·도·부·현) 지역생활사업실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심사청구 및 장애인개호급여비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기초지자체(시·정·촌) 지원</p>
<p>기초지자체 (시·정·촌)</p>	<p>개호급여비, 훈련 등 급여비,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용, 자립지원의료비, 보장구비등의 지급결정 등,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실시, 기초지자체(시·정·촌) 장애인복지계획의 책정</p>

① 기초지자체(시·정·촌)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역할은 개호급여비, 훈련등급여비,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 자립지원의료비, 보장구비등의 지급결정 등, 기초지자체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실시,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책정 등이다. 다만 정신통원의료비에 관한 자립지원의료는 광역지자체의 관할이지만 그 신청은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② 광역지자체(도·도·부·현)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은 육성의료 및 정신통원의료비에 대한 지급결정 등, 광역지자체 지역생활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심사청구 및 장애인 개호급여비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그리고 기초지자체(시·정·촌)에 대한 지원이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사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다. 적절한 운영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는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해 부정 또는 심한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지정효력의 일부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1) 지역생활지원사업

①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제77조 1항).

- 一 . 장애인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계발을 위한 사업
- 二 .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의 가족, 지역주민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三 .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다)
- 四 .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 五 . 장애인에 관련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에 정한 후견, 보좌 및 보조업무를 적정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을 꾀하기 위한 연수 사업.
- 六 .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기타 장애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 기타 일상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소통지원 등(수화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장애인 등과 기타의 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의 파견,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것의 급여 또는 대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 七 .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
- 八 . 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등이 원활히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九 . 장애인 등을 지역활동지원센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니게 하며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기회의 제공, 사회와의 교류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기초지자체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 외에, 현재 주거를 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 홈 기타 시설에서 해당시설의 방실 기타 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1)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실시체제의 정비상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지자체를 대신하여 전항 각호에 든 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제77조 2항).

(2)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제77조 1항 3호, 6호 및 7호에 든 사업 중 특히 전문성이 높은 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및 특히 전문성이 높은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여, 또는 파견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의 파견에 관련된 기초지자체와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기타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제78조 1항).

(3) 광역지자체는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자를 육성하는 사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사업 및 시설

① 사업의 개시 등

(1)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제79조 1항).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 二 . 일반 상담지원 사업 및 특정 상담지원 사업
- 三 . 이동지원사업
- 四 . 지역활동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 五 . 복지 홈을 경영하는 사업

(2)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전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전 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려 할 때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설의 설치 등(제83조)

- 1. 국가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복지계획

이 법 제87조는 기본방침 개인별지원계획 작성기간, 지원계획의 개시 및 효력 인정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후생노동성의 기본방침

(1) 후생노동성 장관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 사업 제공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 二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三 . 다음 조 1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 및 제89조 1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四 . 기타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본지침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본기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장애인 등 및 그 가족, 다른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후생노동성 장관은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속히 기본지침을 변경하도록 한다.

(5)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②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1) 이 법 제88조 1항에서 “기초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二 .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종류별로 필요한 양을 예상
- 三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一 . 전 항 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로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 二 . 전 항 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및 동항 제3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다른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 내의 장애인 등의 숫자, 그 장애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4) 기초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심신상황, 처해진 환경,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들 사항을 감안하여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5)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기본법 제11조 3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인계획, 사회복지법 제107조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제8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이하 이 항 및 제89조 6항에서 [자립지원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8) 장애인기본법 제34조 4항의 지방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장애인 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0)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계획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1)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기본방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제89조 1항).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제89조 2항).

-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 二 .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별로, 해당 구역의 각 년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 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량의 예상
- 三 .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지원시설 필요 입소정원 총수
- 四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항 각 호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一 . 전항 제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 二 . 전항 제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 三 .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구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四 . 전항 제2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동항 제4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기본법 제11조 2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계획, 사회복지법 제108조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지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

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30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계획에 상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의 퇴원 촉진을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하였을 때,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협의회 의견 청취해야 한다.

(6)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장애인기본법 제34조 1항의 지방장애인정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역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2항 각호 사항(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장애인등의 지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장애인등의 복지, 의료, 교육 또는 고용에 관한 직무 종사자, 기타 관계자(다음 항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89조의3 제1항). 여기서 협의회는, 관계기관등이 상호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등의 지원 체제에 대한 과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응한 체제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⑤ 국가의 지원

국가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또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에 힘써 한다(제91조).

4) 비용

① 기초지자체의 지급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제92조).

- 一 .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94조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三 .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四 .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五 .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六 .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광역지자체의 지급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제93조).

- 一 .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 광역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 제94조 1항(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에서 광역지자체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제94조 1항).

- 一. 제92조 1호, 2호 및 5호에 드는 비용 중,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등 급여비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별 인원수, 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등의 인원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 액]이라 한다)의 25/100.

- 一.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二. 지역상담 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94조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五.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 92조 3호 및 4호에 든 비용의 25/100

- 三.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四.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6호에 드는 비용(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25/10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의 부담 및 보조

국가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제95조 1항).

- 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의 50/100
- 二.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3호 및 4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 三.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1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의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9 및 제51조의10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한 사무의 50/100 이내.
- 二.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중 제92조 6호 및 제93조 2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이내.

5)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인 자립지원법 관계업무

①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그 밖에 제29조 7항(제34조 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14 제7항 및 제51조의1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개호급여, 훈련등급여, 특정장애인특별급여, 지역상담지원급여 및 계획상담지원급여의 지불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의결권의 특례

연합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업무(다음 조에서 [장애인 종합지원법 관계업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약대로 의결권에 관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구분 경리

연합회는 이 법 관련업무에 관한 경리를 기타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

1) 개호급여 등의 급여 신청

먼저 개호급여 등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말한다.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신청해야 한다(제20조).

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지급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급신청은 장애인 본인과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다. 신청을 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는 해당 장애아동의 거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하는 곳은 지급결정을 하는 기초지자체이며, 즉 신청자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이다. 장애인 본인과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나 불명확할 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현재 생활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지자체에 신청을 한다. 또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자신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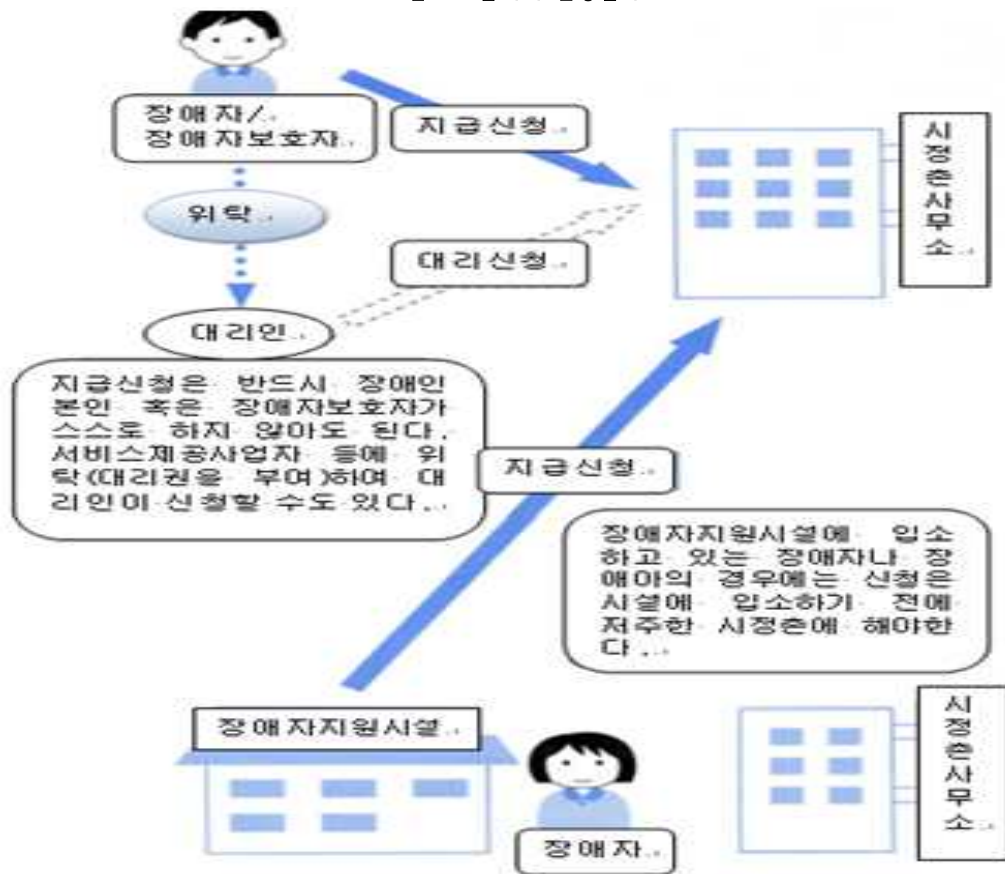
② 신청시의 거주지 특례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시·정·촌)가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제19조 2항).

장애인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신청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한다. 이 경우에 지급결정은 입소전에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입소하고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장애인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는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만 한다. 적법한 지급신청을 받을 기초지자체는 최초의 절차로서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을 한다.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특정시설입소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은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장애인은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그림 6> 급여의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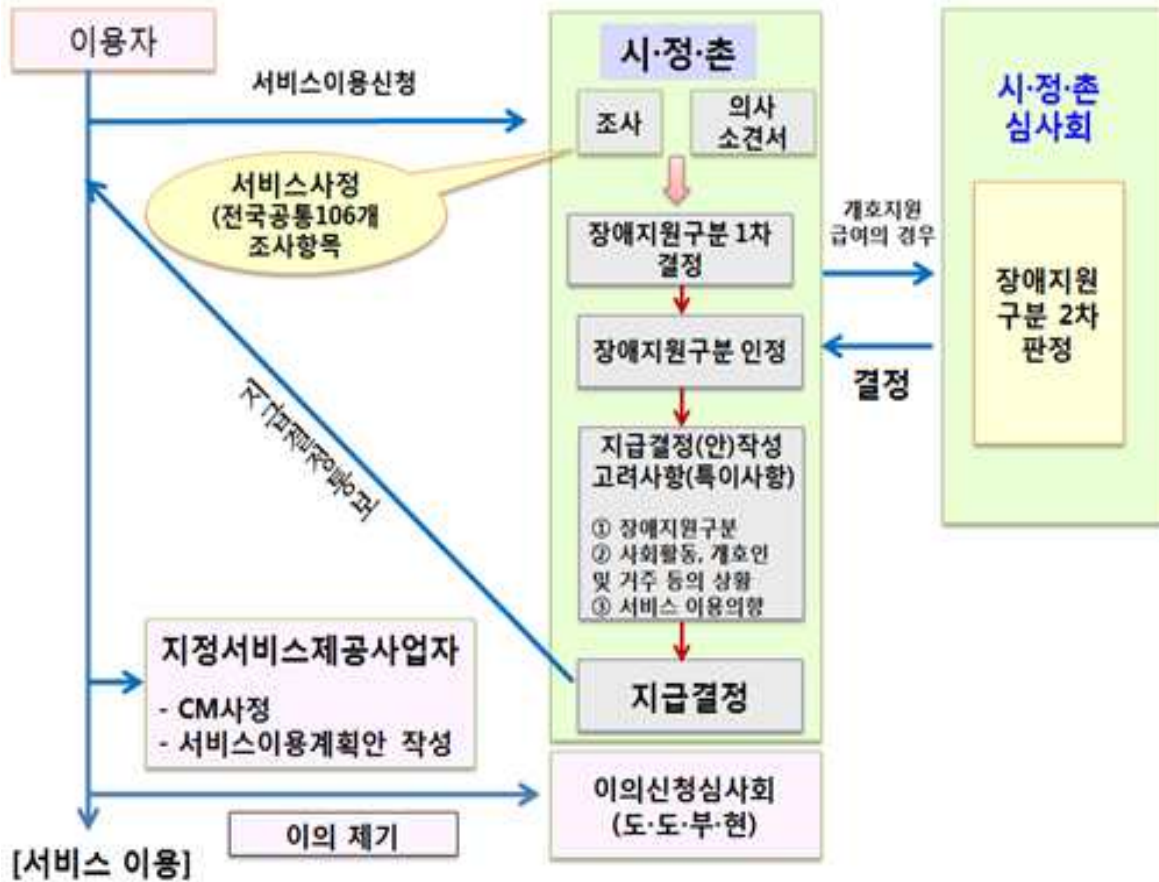
2)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조사

다음에서는 일본 장애지원구분의 인정(판정) 체계를 <그림 7> 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개인의 신체기능과 개인의 환경적 욕구가 표현되는 일본의 판정체계, 그리고 특별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의 시·정·촌심사회는 최종증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게 된다. 장애인의 권리가 기존의 획일적 전달체계 속에서 어떻게 묻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주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내용을 확장하고 전체 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이며, 반대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없이 자립생활의 발전은 없는 것이다.

<그림 7> 장애정도(지원) 구분의 심사과정



① 장애인심신의 상태파악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을 행한다(제21조).

신청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속을 한다. 가장 진행하는 절차가 장애지원 구분 인정조사이다.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향에 규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20조 2항).

이 인정조사는 기초지자체가 하되, 다만 원거리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거주지의 기초지자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정상담지원사업소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시·정·촌심사회는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

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정조사의 내용

인정조사는 장애인본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면접하고 장애지원 구분, 장애종류 및 정도 그 밖의 심신의 상황,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개황상황, 조사, 그 밖의 특기사항 등이다. 개황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정받은 각종 장애등급 등
- ②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상황
- ③ 지역생활관련(외출빈도, 사회활동참가의 상황 등)
- ④ 치로관련(치로상황, 치로경험, 치로희망의 유무)
- ⑤ 일일활동관련(주로 활동하는 장소)
- ⑥ 개호관련(개호자의 유무, 개호자의 건강상태 등)
- ⑦ 거주관련(생활장소, 거주환경)
- ⑧ 그 밖의 서비스종류 또는 양

③ 장애지원 구분의 판정

(1) 1차 판정

인정조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컴퓨터소프트에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다. 조사결과가 지급신청시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의견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인정조사원 등에 내용을 재확인한다. 인정조사원은 기초지자체의 직원 또는 기초지자체가 위탁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 등이며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서 연수를 마친 전문가를 의미한다.

개호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이후 2차 판정으로 진행된다. 훈련 등 급여의 신청에 대해서는 1차 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이 진행된다. 또한 감안사항 조사에는 이용자의 의향을 청취하고 잠정급여가 진행된다. 여기서 잠정급여란 지급결정전에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어떤지 판단하여 좋으면 그대로 이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차 판정

2차 판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개호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2차 판정은 시·정·촌심사회에서 한다. 이 심사판정은 1차판정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의견서 등을 자료로 한다.

시·정·촌심사회는 장애지원구분에 근거하여 1차 판정에서 제시된 장애지원 구분에 맞는지 어떤지 그리고 맞는 경우에는 어느 구분에 맞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한다. 시·정·촌심사회는 장애지원구분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할 때도 의견을 제시한다.

시·정·촌심사회의 심사판정을 거쳐 수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2차 판정으로 장애지원 구분이 확정된다.

3) 시·정·촌심사회에 의한 확인 내용

① 시·정·촌심사회의 역할

시·정·촌심사회 위원회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제16조 1항). 시·정·촌심사회는 조례에서 정해진 정수위원회에 의해서 구성된다.

위원은 장애인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임명한다(제16조 2항). 위원은 장애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 경험자로 기초지자체의 장에 의해 임명된다.

시·정·촌 심사회의 임무는 개호급여의 심사대상자인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1차 판정시에 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특기사항이나 의사의 의견서 내용과 모순이 없는 검토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1차 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변경을 한다. 이 때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기초지자체(시·정·촌) 심사회의 역할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훈련급여 등이 필요한 이용 등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인정의 유효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② 1차 판정의 확정·변경에서 지급결정으로

시·정·촌 심사회에 의해 1차 판정의 결과가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1차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활동참가유무나 개호인에 관한 상황 그리고 거주사항 등을 파악하는 감안사항조사가 행해지고 이용자의 의향을 청취한다. 그리고 훈련등급여에서는 잠정지급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적정한지 어떤지 확인한 후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하여 1차 판정의 결과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1차 판정의 결과가 2차 판정의 결과가 되고 훈련 등의 급여와 동일하게 감안사항 조사가 행해지며 지급결정이 된다.

4) 지급결정에서 서비스이용까지

① 서비스 이용계획의 작성

이 법 제22조 4항(지급여부의 결정 등)에서는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청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제51조의17 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 제51조의17(계획상담지원 급여액)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한다.

- | |
|---|
| <p>一.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제51조의7 제4항(제51조의9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대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51조의6 제1항 또는 제51조의9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등을 받았을 때.</p> <p>二. 지급결정장애인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지정특정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을 받았을 때</p> |
|---|

그리고 동법 제22조 5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등이용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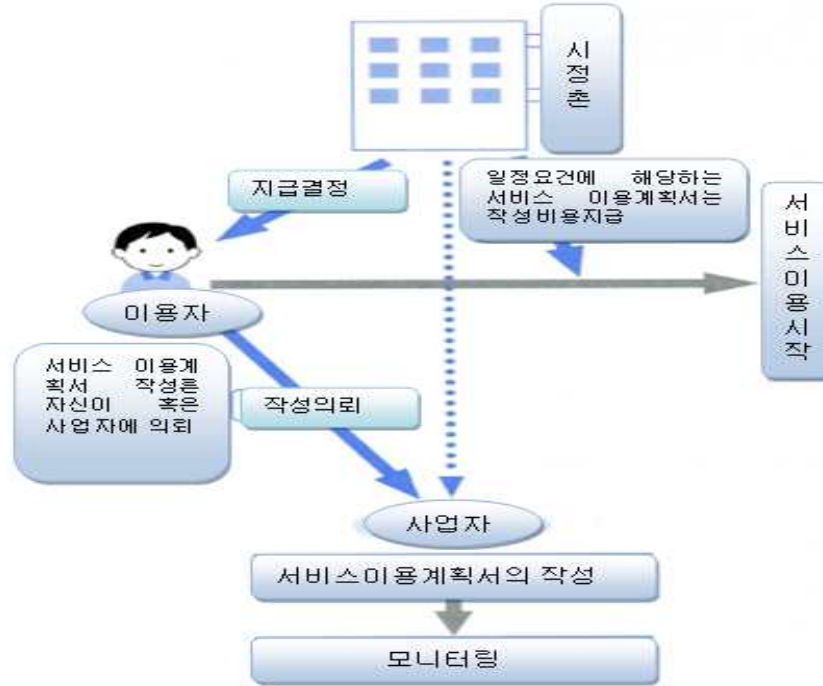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지급결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지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급작스럽게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먼저 이용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작성한다. 서비스 이용계획은 이용자 자신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지정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와 상담할 수도 있다. 또한 스스로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만이 아닌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다.

②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지급

지급결정을 받고 서비스이용계획을 작성해도 특별히 계획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서비스이용작성계획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급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에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 지급신청을 한다. 작성비지급결정이 있을 때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작성을 의뢰하고 사업자와 계약한다.

<그림 8>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결정과정



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전달체계의 과제

가. 장애인의 권리보호 과제

1) 국가 책임 규정의 문제

국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증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급여가 公共財라는 개념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의 주체가 국가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그 내용에 따라 행위규범과 조직규범으로 구분해서 그 임의성과 강제성을 살펴보면 단연코 임의규정(재량규정)이 많다.

2) 재량성 인정에서의 특수성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법에 의한 기속의 정도에 의해 구별하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할 수 있다”(任意規定)를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強制規定)를 기속행위로 보았다.

이 법에서는 임의규정(24개 조항)보다는 강행규정(55개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기속에 따른 복지실천의 의지가 강하게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3) 명령 등 하위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위임조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정령이나 후생노동성령으로 위임한 조항이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현물지원 구체적 조항에 있어서도 하위법령 등에 위임한 사례가 많이 있다. 물론 위임규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중요한 조항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국가책임의 회피 성격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

법치주의는 미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 구제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이애자, 1995). 이 법의 대부분은 그 규율대상의 특수성에 기인한 탓인지, 여하튼 매우 엉성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령 그런 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97조(심사청구)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제102조(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3조(심사를 위한 처분) 제105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등의 규정을 됴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들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통일적인 법체계 미비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에 대한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체계는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이므로, 기본적 수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라 통일적인 입법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수급권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자립생활의 수급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조성하는 입법부터 전개하여야 한다. 前提要件이 성숙되면 현행 장애인종합지원법을 全面改正하든지 간에 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과 조화있게 통일적인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우리의 현실에 規範力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본권의 보장이 具體的 權利性을 획득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있는 조항을 기계적으로 종합할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관련법령은 기초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의 法典”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가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빈곤자의 自活意志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되어 그 기능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복지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주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의 드러난 행정

체계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이원화

장애인복지 서비스 행정체계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직적이며, 二元化된 행정체계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에 있는 장애인복지 부서의 업무수행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후생노동성 부처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앙부처는 일선 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처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급여의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행정체계, 즉 조직,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역할에 있어 국가위임의 과다

중앙집권과 관련하여 행정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할 가운데 중앙부처의 위임사무 비중이 과다하여 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할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위임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구분상태에서 지방으로 역할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이양하는데 소극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양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및 정보와 기술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 의무의 여부를 가리고 대국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즉 자율권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독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 조정 미흡

현재 장애인복지행정의 집행체계가 통일성있게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는 복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치료적 방법으로 대처했던 까닭에 각 복지문제와 제도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의 주무관청이 후생노동성인데, 집행기관은 총리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시정촌과 도도부현)에 맡겨져 있어, 중복통제를 받게 되는 것도 큰 원인이다.

4) 통합적인 공행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이 필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시한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행정과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① 공행정의 전달 체계

우선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각 지자체 내에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전담하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인 복지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②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서비스의 분절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가족들은 접촉하는 기관에 항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중심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분절적인 서비스의 비효과성은 기관마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기관주도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분절성의 문제와 비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설계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one-stop shopping(service)”이다. 이것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신건강, 교육, 재활관련 서비스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분절적인 서비스에서 통합적이고 지원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well being)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와 함께 또 다른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분석의 시사점

앞에서는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법적 구성체계는 물론 그 내용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은 기존 장애인자립지원법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완하는 법률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임무와 제공방식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방식과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오랫동안 장애인기본법 안에서 장애인시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시대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최근에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가 성숙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지원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제도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서, 이 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 사업 기타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근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서 제시되며,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생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가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립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후방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며, 본인에게 정률부담(10%)의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문제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자립을 하고자 해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IL)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 문제라고 제도의 이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법적 구성 체계는 물론 그 내용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으로는 재가개호·요양·방문·목욕·활동보조 등 10여 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개호급여가 있다. 취업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원으로는 자립훈련·취로이행지원·공동생활지원 등으로 이뤄진 훈련 등 급여가 있고, 이동과 지역생활 적응, 주거를 제공하는 지역생활지원 사업 등으로 나뉜다.

즉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와는 서비스 범위가 다른 것이 큰 특징이다.

이 법 제28조에서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① 재택개호 ② 중증방문개호 ③ 동행 원호 ④ 행동원호 ⑤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⑥ 생활개호 ⑦ 단기입소 ⑧ 중증장애자 등 포괄지원 ⑨ 시설입소지원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또한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등급여의 지급은 ① 자립훈련 ② 취업이행지원 ③ 취업계속지원 ④ 공동생활지원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또한 ⑤ 보장구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이 법에서 보장구 급여는 개호보험법에서 지급되고 있는 개호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만을 위한 특수한 재활공학기구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의사전달 장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장구 지급만이 아니라 보장구 수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이점도 있다. 특히, 보장구는 고가이므로 이용자가 최대 10%로 부담함으로써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전동휠체어 등의 필요성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는 본인부담제도(최대 10% 정률부담제도)를 두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급여에 대하여 최대 10%의 정률부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률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 문제는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요양서비스 부분에 있어 추

가적으로 동반되는 식사비용이나 요양수발을 위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대상자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정신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포함된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였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서비스 대상도 명확해졌다는 평가이다. 난병장애로 판정된 경우도 신체기능 평가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며,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됨으로써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호서비스와 훈련급여비, 자립지원의료비, 자립지원 훈련급여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보장구 지급이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보험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동휠체어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장구 및 주택개조서비스 비용까지 이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겼고, 예산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의 강구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본의 복지서비스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기는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가25%, 도·도·부·현(都道府県) 25%, 시·정·촌(市町村) 25%의 재정분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기간상담지원센터와 지역활동지원센터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장애인부모들이 오랫동안 요구하였던 부분이다.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복지센터에서는 소외되어 왔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지원받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복지기관에서 조차도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 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 졌고, 조사연구, 전문가의 육성,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익은 결국 장애인의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자립생활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평생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사회에서 평생 사회가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교육, 거주, 직업 그리고 여가생활 등을 통하여 자립생활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도 자립과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 현실과 상관없이 이념화되어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많다.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장애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률은 오늘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신체적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행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특정 장애인 개인에게만 서비스가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외국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개인 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분절적인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인 서비스로, 신체적 장애인은 물론 정신적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수립해야 할 장애인 정책은 변화의 흐름들을 바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강조하고, 그 가족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등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중요시 여기는 장애인 지원 종합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발표2.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 Fib. e. V.를 통해
살펴본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박 재 우 (우석대학교 강사)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 Fib. e. V.를 통해 살펴본 독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박 재 우 (우석대학교 강사)

I. 여는 글

현재 국내와 독일에서의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는 두 나라간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적 자립생활 주거에 대한 열망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사회적 노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설 주거형태의 주 대상자인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양국의 사회적 인식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더욱 더 척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탈시설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말에 들어 양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국가적 동의인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에 양국은 지적장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환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꾀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독일 헤센 주의 Fib. e. V.라는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의 예를 중심으로 독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독일의 자립지원서비스 기관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독일 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살펴는 이유는 장애인 주거 정책에서 탈시설화의 주 대상자가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능력지향 관점에 따라서 이들의 자립생활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본질적인 장애인복지 이념의 가치를 망각한 허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탈시설화의 핵심적 논의는 이들의 자립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복지학(2016) 31호에 출판된 저자의 독일 '재가 돌봄 주거형태'를 통해 살펴본 지적장애인의 자립적 주거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논문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서울복지재단 전문가 연구포럼자료(2016.10.21. 서울복지재단)로 제출한 것임.

II. 독일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1. 법적 근거와 주거정책

독일에서의 장애인정책은 「기본법」(Grundgesetz: GG)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제1조제1항(GG Art.1 Abs.1)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권력의 의무임(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을 시작으로 제3조제1항(GG Art.3 Abs.1)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동등하다’(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는 보편적인 기본적 가치가 선언되어 있다. 이에 제3조제3항(GG Art.3 Abs.3)에는 ‘누구도 자신의 장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는 조항을 통해 독일에 사는 모든 장애인들은 국가로부터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않은 삶을 영위할 기본적 동등권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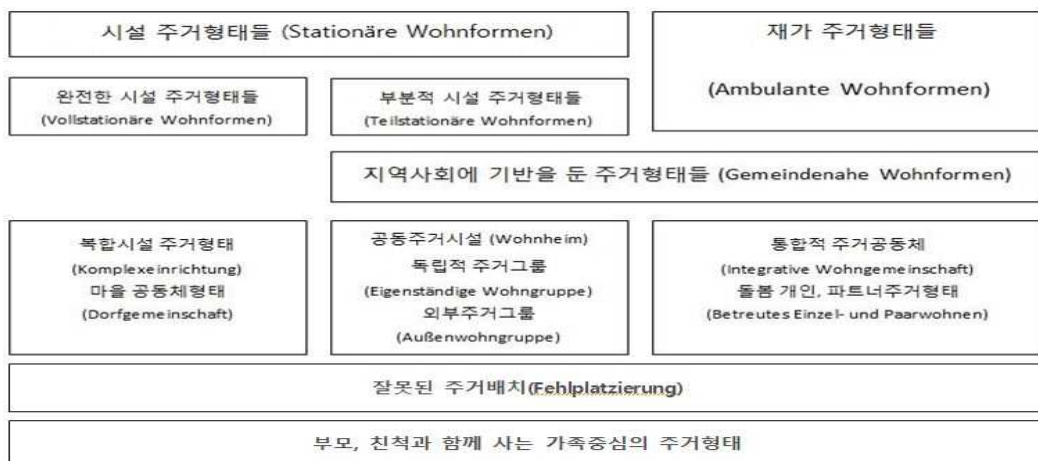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독일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은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제12권 제13조의 ‘시설보다 재가의 우선성’이라는(‘ambulant’ vor ‘stationär’) 법적 원칙을 기본으로 한 이른바 탈시설화라고 말할 수 있다(Sozialgesetzbuch VII Sozialhilfe §13 Leistungen für Einrichtungen, Vorrang anderer Leistungen: 1388).

2009년 이후 들어 독일의 장애인정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국 목록)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기존 정책에 대한 개혁 조치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2. 주거 유형과 현황

2. 1. 주거 유형

독일에 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형태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간략히 소개할 수 있다.



<그림 1> 독일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형태들(Dworschak, 2004 참고로 재구성)

연방노동사회복지부¹⁾(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4) 등의 자료들에 따르면 독일에 사는 성인장애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부모나 친척집에 함께 사는 방식이다(Gusset-Bährer, 2002; Walter, 1987;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4).

다음으로는 양로원이나 병원 같은 적합지 않은 시설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잘못된 주거방식이다(Brings und Rohrman, 2002).. 2000년 말 연구에 의하면 독일 헤센 주 한 곳의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총 1.427명의 60세 이하 젊은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rolshagen und Rohrman, 2003).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 내 장애인들을 위한 주된 주거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눠 구분할 수 있다.

- 1) 시설 주거형태들(Stationäre Wohnformen),
- 2) 재가 주거형태들(Ambulante Wohnformen).

이 2가지 주거형태들은 다시 공간적 생활구조나 돌봄 서비스 체계의 관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간적 생활구조는 폐쇄된 주거형태와 개방된 주거형태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24시간 돌봄 형태, 반나절, 파트 타임식 돌봄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 1. 1. 시설 주거형태

시설 주거형태를 공간적 생활구조와 돌봄 서비스 체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 1) 폐쇄된 주거형태로서 완전한 시설 주거형태(24시간 돌봄 형태)
 - 교육담당 및 일상생활 지원 어시스턴트들이 장애인들과 같은 주거공간에 항시 상주하고 있으며 직업,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공간 안에서 제공하여 내부적으로 일상적 구조들을 갖춘 완전한 시설 형태
 - 예) 복합시설 주거형태, 마을 공동체 형태.
- 2) 폐쇄된 주거형태로서 부분적 시설 주거형태(24시간 돌봄 혹은 반나절 돌봄 형태)
 -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들이 항시 혹은 반나절 정도로 장애인들의 주거공간에 함께 머무르며 직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된 형태
 - 예) 공동 주거시설(Wohnheim).
 - 시설 주거형태와 재가 주거형태와의 중간적 성격.
 - 예) 독립적 주거그룹과 소규모의 주거그룹을 형성하는 외부 주거그룹.

공동주거시설은 완전한 시설 형태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고 때때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체 생활에 따라 개인의 자유, 주거인들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요구나 개인의 선택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주거형태의 대표적 특징은 복합

1) 부처명칭에 대한 번역은 2010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를 참조로 하였음.

시설 주거형태와 같이 단체 생활과 거주인들의 관리 및 통제에 적합한 일반화 및 행정관리 시스템의 중앙화를 들 수 있다(Harnack, 1997).

독립적 주거그룹은 시설 주거서비스 운영주체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주로서 장애인들에게 지역 사회 내의 삶을 제공한다. 24시간 지원 어시스턴트들이 상주하며 공동주거시설과 외부주거그룹의 중간 형태이다.

외부주거그룹은 일반 주거시장에서 시설 주거서비스 운영주체가 주거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이며 주거 공동체(Wohngemeinschaft; WG) 형태를 이루며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방식이다.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가 낮 동안 주거공간에 머무르든지 혹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머무르기도 하여 응급상황 시 장애인들이 이들을 깨울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2. 1. 2. 재가 주거형태

재가 주거형태들은 정상적 지역사회 내 일반적 형태의 주거시장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방식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고유한 주거공간이나 주거공동체(WG)에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 요구에 따른 재가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재가 주거형태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WV Hessen, 2015).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원하는 대로 시내를 오갈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 살지, 집안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지를 선택하며 제약 없이 손님이나 가족의 방문 등을 계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도우미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Lebenshilfe 홈페이지, Wohnheim oder Betreutes Wohnen?)을 누릴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

재가 주거형태를 공간적 생활구조와 돌봄 서비스 체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통합적 주거공동체(개별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재가 주거형태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회원들이 일부 공동으로 주거하는 형태이거나 정상적 주거시장의 주거공동체 (Wohngemeinschaft; WG),
- 2) 돌봄 주거형태(개별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일반 지역사회에 개별적으로 통합되어 살고 있는 개인이나 부부 및 파트너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

재가 주거형태는 개방된 주거형태로서 5명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LWV Hessen, 2005: 3)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24시간 돌봄 형태에서 파트 타임식 재가 돌봄형태).

시설 주거형태들과 재가 주거형태들의 비용에 대한 BAGüS의 비교조사에 따르면(BAGüS, 2012)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재가주거형태들이 시설주거형태들에 비해 17%의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어 재가주거형태의 “경제성”이 지적장애인들의 대안적 주거방안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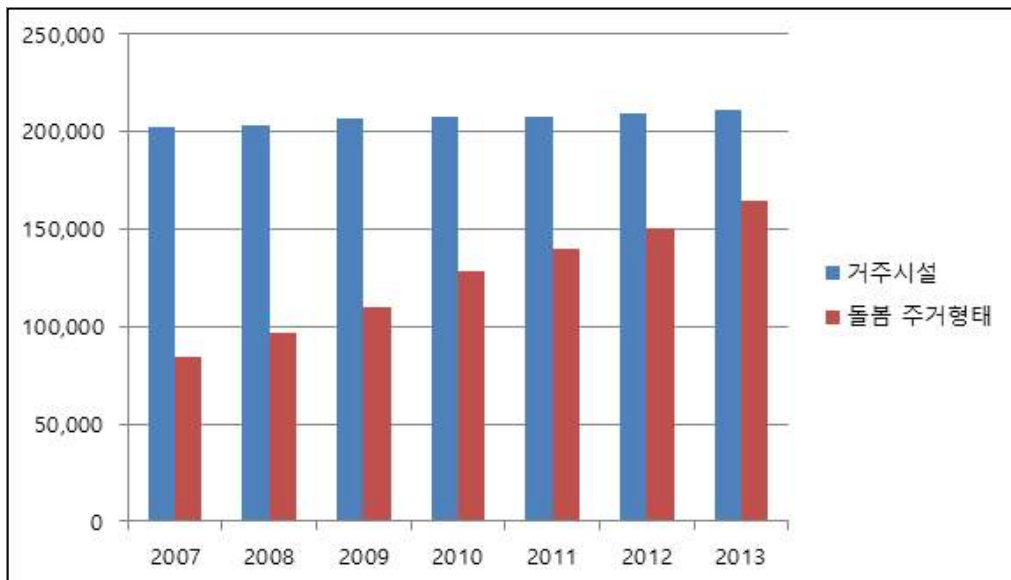
2. 2. 주거 현황

2. 2. 1. 탈시설화

독일 내 장애인들의 주거상황에 대한 흐름은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초지역적 공공부조관리운영주체 연방공동협력단체 (BAGüS)의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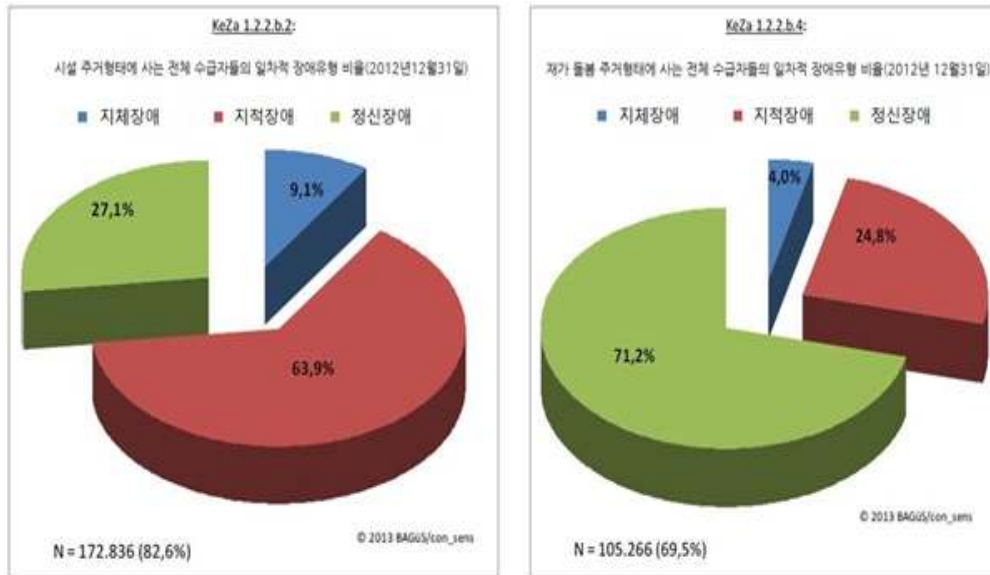
2013년 기준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는 공식적으로 1,020만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고 이중 대략 750만명(73.5%)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독일연방통계청, 2014). 이들 중증장애인 중 신체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경우가 460만명(61.3%)으로서 대부분이며(Leidmedien 사이트) 다음은 뇌-, 지적- 혹은 정신장애(Zerebral, geistig und/oder seelisch bedingte Behinderungen)를 가진 경우가 154만명(15%) 그리고 기타 장애가 133만명(13%)이다(Leidmedien 사이트).

초지역적 공공부조관리운영주체 연방공동협력단체(BAGüS)의 보고에 의하면 독일 전체 장애인의 경우, 재가 돌봄 주거형태의 비중이 시설 주거형태와의 비교에서 2000년대에는 독일 전체 평균이 대략 20%였고 2012년에는 독일 전체 평균 44%로서 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며(BAGüS, 2013) 2013년 말에는 성인 장애인들의 46%가 재가 돌봄 주거형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BAGüS, 2014). 이러한 추세를 비교해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수가 매년 평균 0.7%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상적인 독립적 주거공간형태로 볼 수 있는 재가 돌봄 주거형태(ambulant Betreutes Wohnen)에 사는 장애인들의 수는 매년 평균 11.8%씩 상승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거주시설과 재가 돌봄 주거형태에 사는 장애인들의 연도별 변화 경향(BAGüS, 2013 참조).

2. 2. 2. 장애 유형에 따른 주거 형태의 특징



<그림 3> 독일 시설과 자가 돌봄 주거형태에서 장애종류 비율에 따른 비교(BAGüS, 2012; 2013)

2013년 기준 시설 주거형태와 자가 돌봄 주거형태에서의 주된 장애종류 비율을 살펴보면,

- 시설 주거형태에서의 주된 장애종류 비율
 - 지체장애 9.1%, 정신적 장애 27.1% 그리고 지적장애가 63.9%를 차지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시설 주거형태의 주 대상자이며<그림 3 왼쪽>.
- 자가 돌봄 주거형태에서의 주된 장애종류 비율
 - 지체 4%, 지적장애 24.8% 그리고 정신적 장애가 71.2%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 오른쪽>.

2014년 말에는 자가 혹은 시설에서 도움(Ambulante oder stationäre Betreuung)을 받는 독일 내 장애인들이 383,542명이며 이중 시설에서 지내는 (성인)장애인들은 54%이며 이들 중 대략 2/3정도가 지적장애인들이다.

자가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46%인 169,488명이며 이는 2013년 대비 6%가 증가한 상황으로 자가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26%(2014년 기준)를 차지한다(BAGüS, 2016). 자가 돌봄 주거형태에 사는 전체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들의 비율 변화추세를 보면 2005년 11.8%에서 2013년 25.3% 그리고 2014년에는 26%를 차지하여 이들에게서도 자가 돌봄 주거형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AGü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즉, 독일의 장애인 주거 정책인 탈시설화에 있어 시설의 주 대상자인 지적장애인들의 자가 주거형태로의 변화경향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3. 요약

독일에서의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재가 주거형태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시설 주거형태의 주 대상자인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주거서비스도 점차적으로 재가 주거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III. Hessen주의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전환서비스

독일 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주거형태로 재가 주거형태들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예) Betreutes Wohnen 혹은 Unterstütztes Wohnen) 헤센 주의 경우 '주 복지협회 헤센' (Landeswohlfahrtverband Hessen; LWV HE)은 '돌봄 주거'(Betreutes Wohnen)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초지역적 공공부조관리운영주체 연방공동협력단체 (BAGüS)에서 '재가 돌봄 주거'(Ambulant Betreutes Wohnen)라는 명칭과 더불어 시설 주거형태에도 '시설 돌봄 주거'(Stationär betreutes Wohne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여기서는 헤센 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거형태로서 '돌봄 주거'를 '재가 돌봄 주거'로 사용한다.

헤센 주 재가 돌봄 주거형태들은 '주 복지협회 헤센'(LWV Hessen)이 1986년 도입하였고 이 협회가 초지역적 공공부조관리운영주체이자 계획 및 조직을 담당하는 주체로 헤센 주 내의 재가 돌봄 주거 입주인원 수를 결정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로 기능한다(LWV Hessen, 2005).

2014년 독일의 재가 돌봄 주거비율 평균 46%인데 비해 헤센 주의 재가 돌봄 주거비율은 52%로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BAGüS, 2014) 2015년 12월 31일 기준 헤센 주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 형태 자리는 총 16,343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LWV Hessen 홈페이지 2016년 10월 03일 인출).

- 장애 및 질병 종류에 따른 재가 돌봄 주거 지원영역
 - 1) 지체 및 감각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
 - 2) 중독질병 및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
 - 3) 지적장애인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LWV Hessen 인터넷 참조).
- 재가 돌봄 주거의 일반적 형태
 - 단독,
 - 파트너 혹은 부부 주거형태,
 - 쉼어하우스와 같은 주거공동체(Wohngemeinschaft).
- 재가 돌봄 주거형태들을 위한 주 복지협회의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뉜다.
(LWV Hessen, 2009; Urban, 1997;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06 재인용 박재우, 2013).
 - 1)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사회법전(SGB)의 제12권제55조제2항의 6번에 따름).

2)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이나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정(사회법전(SGB) 제11권제14조와 제15조에 따름).

주 복지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가 돌봄 주거에서 이뤄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 자립지원서비스
 - 1)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기관
 - 2) 돌봄 서비스 인원

다음은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에 있어 가장 소외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헤센 주 Fib. e. V.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Fib. e. V.의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를 통해 살펴본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1.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기관의 예) Fib. e. V.

지적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거공간에서 자신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 이러한 삶은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교량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Ambulante Hilfe/Dienste)과의 협동을 통해 이뤄진다.

이 기관은 1982년 장애인들의 통합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자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설립된 협회이다(Fib. e. V. 소책자, 2012). “장애”로 명명된 사람들에 대한 결핍 지향적 관점을 극복하고자 설립된 이 협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가 서비스의 구축(Aufbau ambulanter Dienste)을 과제로 삼고 있다. Fib은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들이 부모의 집이나 시설이 아닌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자기 결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Fib. e. V. 홈페이지).

이 기관은 제약 없는 사회 참여(Gesellschaftliche Teilhabe), 개인적이고 스스로 택한 삶의 실현(Selbst gewählter Lebensform), 소망한 지원형태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자유권, “재가 우선원칙”의 기본법에 대한 지속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Fib은 지적장애인이란 명칭 대신 “지원이 필요한 사람”(Menschen mit Unterstützungsbedarf)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는 회원들을 “고객”으로 부르며 고객들이 스스로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Fib. e. V. 소책자, 2012).

- 운영하는 활동영역
 - 1)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돌봄 주거(das Unterstützte Wohnen),
예) 정체성 발견, 인격강화 및 발달 지원,

- 일상생활 극복 지원,
- 일상생활 능력 습득 지원,
- 사회적 삶에서의 참여 지원,
- 위기의 극복 지원 등.

2) 일상생활 극복을 위한 수발이나 일상적 활동들을 필요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시스턴트(Assistenz),

- 예) 수발로써 아침기상, 취침, 식사나 신체수발 등,
 가사활동 지원으로써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 및 빨래 등,
 이동 지원으로써 여가활동의 동행 등,
 일반적 개인 지원으로써 일기, 컴퓨터 사용, 의사소통 지원 등 기타 지원.

3)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Familienunterstützende Dienst; FU),

- 예) 수발로써 식사, 목욕 등.
 여가활동 동행(수영, 영화관 및 여행 등),
 병원방문 및 치료 동행,
 관청 방문 시 동행.

4) 학교 통합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동행(Schulbegleitung),

- 예) 통합학교 수업에서의 지원,

5) 상담

- 예) 학교, 직업, 주거 등 일반적 사회상담,
 일상적 문제나 어시스턴트와의 관계 문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정에서 동행 같은 심리사회
 적 상담,
 장애인들이 자신들 문제의 전문가로서 조언하는 peer counseling.

○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발전경향

- 1985년 4명으로 시작,
- 1995년 33명,
- 2004년 67명,
- 2006년 총 71명. 이 중 지적장애인 56명, 지체장애인 15명,
- 2012년 총 97명. 이 중 지적장애인 68명, 지체장애인 29명. 이들을 지원 위한 교육전문 지원 어시스턴트 (Pädagogische Fachkräfte)들이 약 30여명.

○ 가능한 주거 형태의 예

- 단독,
- 부부,
- 주거공동체,
- 가족이나 이성 파트너와의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

○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를 받기 이전의 주거상황

- 부모의 집(43%),
- 시설(25%).
- 기타.

예) 다른 재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기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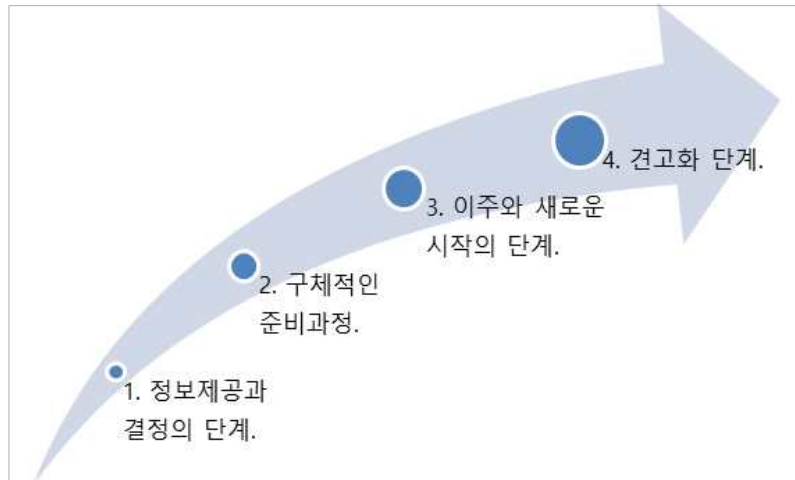
○ 재가 돌봄 주거형태

- 독거(52%),
- 주거공동체(WG, 19%),
- 파트너(13%).

○ 연령층

- 41세에서 50세(27%),
- 19세에서 25세(18%),
- 26세에서 30세(15%), 31세에서 40세(15%)(Fib. e. V. 소책자, 2012).

부모 혹은 시설에서 재가 돌봄 주거형태로 거주 환경을 옮기는 일반적 과정을 Fib. e. V.의 자료를 참고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4 단계로 도식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독일 재가 돌봄 주거형태로의 전환과정(Fib. e. V., (2008) 참조)

1. 정보제공과 결정의 단계: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당사자 및 가족들의 상담이 이뤄지며 재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2. 실질적인 준비과정(konkrete Vorbereitung):

지적장애인이거나 가족들이 재가 돌봄 주거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재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은 당사자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나 사회적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수집, 이를 통해 개별적 취향이나 요구에 맞는 주거공간을 찾음. 재가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조율.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재가 돌봄 서비스 인원 간의 신뢰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고 강화됨.

3. 이주와 새로운 시작의 단계:

일반 주거시장에서 적합한 공간이 발견되면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취향이나 요구에 맞는지를 직접 확인. 이주가 결정되면 집안의 인테리어나 수리 및 가구배치 등을 기관이나 가족, 친구 등의 도움을 통해 준비.

4. 견고화 단계:

새 거주공간에서 서서히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 시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의 적응이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생활담당 및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들과의 실질적 관계를 통해 재가 돌봄 주거형태에서의 환경이 적응되는 단계(Fib. e. V., 2008).

독일 헤센 주 Fib. e. V.의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기관의 실질적 지원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지적장애인들의 주거- 및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 결정적 역할지원이다. 즉, '재가 돌봄 주거형태'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실질적 삶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에서부터 자신의 욕구에 맞는 주거형태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뤄지고 있다.

2. 돌봄 서비스 인원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적 주거생활의 첫걸음은 위와 같이 생활지역내에 있는 재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Ambulante Hilfe/Dienste)을 스스로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지적장애인들은 선택한 재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인 필요 정도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지원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에 속한 돌봄 인원을 통해 이뤄진다.

○ 이와 관련된 돌봄 서비스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Pädagogische BetreuerInnen)

-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 지역사회 속에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서비스를 제공.
- 당사자나 부모 혹은 후견인과 함께 교육전문 도움 지원.

예) 일상의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독립과정 동행, 주거 물색, 이동지원에 필요한 어시스턴트 연계 조율, 생활비 관리상담, 직장 문제 상담 등(Theunissen, 2001; LWV Hessen, 2005).

(2) 일상생활 지원 어시스턴트(Assistenz)

-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이나 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정에 의해 운영(사회법전 (SGB) 제11권 제14조와 15조에 따름). 사회법전 11장(SGB XI)에 따라 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sgesetz)의 수발등급에 의해 실질적 일상생활 지원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LWV, 2008).
- 대부분 대학생들로서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예) 설거지, 요리하기, 시장보기, 청소 등.

○ Fib. e. V. 기관 내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인원 지원 시간(2012년 8월 기준) (Fib. e. V. 소책자, 2012).

(1)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Pädagogische BetreuerInnen)들로부터의 심리사회적 지원 (시간/주, N=95)

- 3,8시간(35명, 36,8%),
- 5,5시간(23명, 24,2%),

- 1,9시간(15명, 15,7%),

- 기타.

(2) 일상생활 지원 어시스턴트들의 지원 시간(시간/일, N=55)

- 1시간(14명, 25,5%),

- 2시간(11명, 20%),

- 6시간(7명, 12,7%),

- 19시간(1명).

- 기타.

3. 실질적인 재가 돌봄 주거형태에서의 삶 예

40대 남성 FK씨, 그의 여자 친구인 30대 S씨 그리고 친구이자 또 다른 룸메이트인 G 씨는 주거공동체를 이루며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시내에 위치한 한 C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FK씨는 각종 관공서 업무, 우편과 같은 행정적인 서류처리 그리고 은행 관련 업무 및 돈 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박재우 2013). FK씨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였고 10여 년간 다양한 시설 주거형태에서 살았으며 현재 10년 넘게 재가 돌봄 주거형태에서 살고 있다. FK씨가 살고 있던 시설기관은 재가우선원칙의 흐름에 따라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를 추가로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형태를 바꿀 의사를 지니고 있던 FK씨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았다. FK씨는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주거지 후보를 물색했고 본인이 직접 주거환경을 확인한 후 주거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후 3 차례 더 이사를 한 FK씨는 지금의 C지역 아파트를 선택, 거주하고 있다.

여자친구 S씨의 경우는 FK씨보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FK씨가 속한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재가 돌봄 주거로의 입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을 찾게 되었고 이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거공동체에는 FK씨와 G씨를 위한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와 S씨를 위한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가 각각 다른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들로부터 방문하고 있다. 일주일에 2번 방문하는 FK씨를 위한 교육전문 지원 어시스턴트는 집으로 방문하거나 시내에서 FK씨를 만나기도 하고 은행 서류업무 등의 행정업무나 병원 방문 시 동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원들인 어시스턴트들은 '재가 돌봄 주거'에서 고객과 실질적 일상생활에 관련하는 집단으로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Pädagogische BetreuerInnen)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어시스턴트들이다. 이는 재가 돌봄 주거형태에 있어서 성공적인 자립생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다(박재우, 2013). 이 어시스턴트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연계된 종속(Abhängigkeit)과 타인의 결정(Fremdbestimmung)의 형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Urban 1997)하는 것으로 이들의 실질적 일상생활의 역할은 시설에서 혹은 권위/위계질서/권력 구조 하의 교사 및 직원과는 구별된다.

FK씨의 일상생활은 아침에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외곽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S씨는 그동안 집에 머무르며 집안 청소, 이웃과의 대화 혹은 다른 장애인과의 만남 등 일상적 활동을 한다. FK씨는 퇴근 후에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와 시 외곽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K 빵집에 들러 S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주인,

종업원들 그리고 여기에 들리는 다른 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한다. 이곳은 „정상적인“ 평범한 빵집으로 일반 손님들로부터 시설, 마을공동체, 재가 돌봄 주거형태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이다. FK씨는 그 후에 장을 보거나 국민을 위한 교육기관(Volksschul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며 혹은 돌봄 주거서비스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단골 손님화합모임(Stammtisch)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및 다른 이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단골손님화합모임은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행사로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가 참여하여 이들의 모임에 동행한다. 이 모임은 도시 내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개최되며 장소의 선정이나 음식의 종류들은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이 모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각각의 다른 주거환경에 사는 장애인들 모두가 참여하며 각종 모임 및 재가 돌봄 주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동료 상담의 역할로도 기능한다. 이 밖에도 지역 상점들과 음식점들의 단골이 되어 이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통합의 역할도 하고 있다.

FK씨와 S씨는 때로는 퇴근 후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간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선물을 시내에서 고르기도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른 동료나 친구들과 운동, 산책을 하러 가거나 이전에 알던 이들, 친구가 된 옛 어시스턴트들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를 방문하기도 한다.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집 외의 장소를 제공받기도 하며 이런 날에는 여러 주거형태들에 거주하는 친구, 동료들, 이웃, 비장애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FK씨와 S씨는 이들에게 보낼 초대카드를 직접 작성하며 당일에는 도착한 손님들을 대접한다. 이러한 행사의 음식은 FK씨와 S씨가 준비한 음식과 다과 이 외에 이웃이나 친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단골집의 주인 및 종업원들이 모임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거나 후원하여 참석한다.

단골손님 화합모임 외에 Fib과 같은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에서는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고객대표자모임 등과 같은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Fib의 경우 고객대표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행사나 고객들의 어려움 및 기타 안건들을 결정한다. 이 모임에는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가 참여하지만 회의 기록이나 제안 등과 같은 대표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을 지도 및 가르치는 위계적 관계를 이루지는 않고 있다.

‘재가 돌봄 주거형태’ 운영 주체인 Fib의 경우 고객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고 있으며 기관 및 지원 어시스턴트들은 이들의 필요한 요구와 심리사회적 및 교육적 측면의 지원을 고객과의 계약 하에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4. 요약

이와 같이 재가 돌봄 주거 서비스 운영 기관 및 기관의 돌봄 서비스 인원들이 제공하는 지원들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재가 돌봄 주거형태는 단순한 지역 사회 속 주거공간의 제공만을 통한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생활밀착형 교류를 가능케 한다.

이상과 같이 헤센 주 Fib. e. V.의 재가 돌봄 주거지원 예를 통해 살펴본 독일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재가우선의 원칙에 따른 탈 시설화와 자기 결정적 자립생활의 지원이 핵심이다. 이러한 핵심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1) 재가 돌봄 주거 우선 선택권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다.
- 2)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당사자가 주체이다.
예) 지원서비스의 유연성, 공동구성 및 공동결정의 권리,
- 3) 재가 돌봄 주거서비스 운영 기관은 장애인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업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예)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협력용의(Kooperationsbereitschaft), 자조모임 지원(고객대표자모임 (KundInnenvertretung), 단골모임(Stammtisch) 등.
- 4) 재가 돌봄 주거 대상자는 시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포함한다.

V. 맺는 글

이와 같이 독일의 재가 돌봄 주거형태를 통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독일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 1) 제한된 재정에 따른 현실적 주거지의 선택에 따른 문제,
예) 사회문제가 빈번한 지역,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문제, 안전 문제, 이동성의 불편함 등,
- 2) 심리적인 고독 및 고립,
- 3) 잘못된 식습관에 따른 영양불균형 및 건강의 위협 등 “방치”의 위험들,
- 4) 일상생활 지원 어시스턴트들의 서비스 문제나 교육담당 지원 어시스턴트(pädagogische BetreuerInnen)와의 자기결정과 책임이라는 불균형의 딜레마 문제 등.

이러한 헤센 지역에서의 문제들은 성공적인 자립생활의 보장이 물리적인 주거형태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교육학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박재우, 2013). 당면한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기관 및 지원 어시스턴트들과 지적장애인들의 갈등 해소를 중재할 제삼자 기구 운영, 재가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이나 지원 어시스턴트들과의 종속 및 의존적 관계를 개선하여 당사자가 서비스고용의 주체가 되도록 당사자들의 다양한 소득원들에 대한 통합된 직접지불제도의 연구와 같은 논의도 활발하다(박재우, 2013).

이러한 독일 헤센 지역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경험들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척박한 주거상황에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재우 (2013). ‘돌봄주거’(betreutes Wohnen) 환경에 사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기 결정적 삶 고찰. 원제: Selbstbestimmtes Leben für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im betreuten Wohnen. 박사학위논문, Marburg..
- 통일부 (2010).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 2.9 환경부. 2010년 통일부 프로젝트.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 Brings, Norbert/Rohrmann, Eckhard (2002). Jüngere Behinderte in Einrichtungen der stationären Altenhilfe. In: Zeitschrift für Heilpädagogik(53) Heft 4.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BAGüS) (2009). Kennzahlenvergleich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2007 und 2008. - Münster.
-
- (2010). Kennzahlen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2009. Hamburg: BAGüS/con_sens.
-
- (2011). Kennzahlen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2010. Hamburg: BAGüS/con_sens.
-
- (2012). Kennzahlen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2011. Hamburg: BAGüS/con_sens.
-
- (2014). Kennzahlen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2013. Hamburg: BAGüS/con_sens.
-
- (2016). Kennzahlenvergleich Eingliederungshilfe der über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 2014. Hamburg: BAGüS/con_sens.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Hrsg.) (1994). Dritt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148.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06). Pflegeversicherung. Schutz für die ganze Familie. - Berlin.
- Drolshagen, Markus/Rohrmann, Eckhard (2003). „Fehlplatzierungen jüngerer Behinderter in der stationären Altenhilfe aus der Sicht der Betroffenen“. Zeitschrift für Heilpädagogik. 54(11).
- Dworschak, Wolfgang (2004). Lebensqualität vo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 Theoretische Analyse, empirische Erfassung und grundlegende Aspekte qualitativer Netzwerkanalyse. - Bad Heilbrunn.
- Fib. e. V. (2012). Der Arbeitsbereich Unterstütztes Wohnen des fib e. V. Marburg. Wer sind wir? Was wollen wir? Was tun wir? Broschüre. Marburg.
- Gusset-Bährer, Sinikka (2002). „Dass man das weiterträgt, was ältere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wichtig ist.“ Ältere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im Übergang in den Ruhestand. Diss. Heidelberg.
- Harnack, Maike (1997). Lebenslang fremdbestimmt - (k)eine Zukunftsperspektive für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In: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für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e. V.(Hrsg.): Selbstbestimmung - Kongreßbeiträge: Dokumentation des Kongresses »Ich weiss doch selbst, was ich will!!«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auf dem Weg zu mehr Selbstbestimmung vom 27. September bis zum 1. Oktober 1994 in Duisburg. 2. Aufl. Marburg.
- Landeswohlfahrtsverband Hessen(LWV)(Hrsg.): Betreutes Wohnen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in Hessen -

- Ein Baustein für ein selbstbestimmtes Leben - Kassel: 2005.
- Landeswohlfahrtsverband Hessen(LWV) (2008). Ein Schlüssel zu mehr Selbstständigkeit. Erfahrungen im Betreuten Wohnen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in Hessen. - Kassel.
- _____ (2009). Ein Schlüssel zur eigenen Wohnung. Menschen erzählen aus ihrem Leben im Betreuten Wohnen. Ein Heft in leichter Sprache. - Kassel.
- Landeswohlfahrtsverband Hessen(LWV)(Hrsg.) (2005). Betreutes Wohnen für Behinderte Menschen. Ein Leitfaden für Anbieter. Kassel.
- Sozialgesetzbuch (2007). Sozialgesetzbuch. 34. Aufl..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 Co. KG.
- Statistisches Bundesamt(독일연방통계청) (2014). „Statistik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 Theunissen, Georg (2001). Begleitung ohne Engagement genügt nicht - assistierende Hilfen im Lichte von Empowerment. In: Theunissen, Georg(Hrsg.): Verhaltensauffälligkeiten - Ausdruck von Selbstbestimmung? Wegweisende Impulse für die heilpädagogische, therapeutische und alltägliche Arbeit mit geistig behinderten Menschen. 2. Aufl. - Baden Heilbrunn.
- Urban, Wolfgang (1997). Ambulante Hilfen zum selbständigen Wohnen für geistig behinderte Erwachsene. In: Zeitschrift „Behinderte in Familie, Schule und Gesellschaft“ 1.
- Verein zur Förderung der Integration Behinderter e. V.(Fib. e. V.) (2008). Ambulante Dienste und Beratung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Fib. e. V.: Der Reader zur Fachtagung. „Mittendrin statt nur dabei?! Selbstbestimmtes Leben und Wohnen vo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Marburg: Fib. e. V.
- Walter, Jochim/Hoyler-Herrmann, Annerose (1987). Erwachsenein und Sexualität in der Lebenswirklichkeit geistig behinderter Menschen. Biografische Interviews. Gesellschaft für Sexualerziehung und Sexualmedizin Baden-Württemberg e. V. Bd. 3. - Heidelberg.
-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e. V.: Wohnheim oder Betreutes Wohnen? <http://www.lebenshilfe.de/de/leichte-sprache/wohnen/so-wollen-wir-wohnen/Wohnheim-oder-betreutes-Wohnen.php?listLink=1> 2014년 2월 26일 인출.
- Gesetze im Internet. Grundgesetz.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1.html. 2016년 10월 17일 인출.
- Landeswohlfahrtsverband Hessen(LWV) 홈페이지. <https://www.lwv-hessen.de/> 2016년 10월 03일 인출.
- Leidmedien.de Menschen mit Behinderung in Deutschland - Zahlen und Gesetze. <http://leidmedien.de/sprache-kultur-und-politik/behinderte-menschen-in-deutschland-zahlen-und-gesetze/> 로부터 2016년 10월 10일 인출.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국 목록.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EndDec. 2012년 8월11일 인출.
- Verein zur Förderung der Inklusion behinderter Menschen(Fib. e. V.) 홈페이지. <http://www.fib-ev-marburg.de/> 2016년 10월 03일 인출.